

1970년 인구센서스를위한아세아지역의권고안

**ASIAN RECOMMENDATION FOR THE 1970
POPULATION CENSUSES**

경 제 기 획 원
* 조 사 통 계 국

006150

— 차 례 —

서 론 (1 ~ 6 절)	3
제 Ⅰ 편 인구센서스에 있어서의 조사항목 (7 ~ 112 절)	5
A . 조사항목선택에 관한 제요인 (7 ~ 12 절)	5
B . 조사항목의 「리스트」 (13 ~ 19 절)	8
C . 조사항목의 정의 및 내용 (20 ~ 112 절)	12
제 Ⅱ 편 인구센서스에 있어서 작성되어야 할 제표 (113 ~ 124 절)	49
A . 제표의 범위 및 목적 (113 ~ 122 절)	49
B . 제표의 「리스트」 (123 절)	52
C . 각 제표에 대한 내용 (규정) (124 절)	54
부 록	95
제 Ⅲ 편에 제시된 제표의 예시 (도)	95

서 론

1. 인구센서스(Census)의 목적은 주로 통계자료에 관한 국가의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있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의 통계자료의 필요성은 센서스의 조사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기본요소(Main factor)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센서스의 조사내용에 따르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 자료들을 이용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센서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여러나라의 적절한 제반경험을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크다고하겠으며 더욱 그조사방법을 개선시키는게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것들 외에도 센서스자료를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한 중요성을 지니게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센서스에 요구되는 사항은 센서스조사항목 및 정의의 일치 분류(Classification) 및 제표등의 국제적인 일정기준화를 통하여 센서스자료의 국제적 비교성을 증대 시키는데 있는것이다.

2. 그러므로 본권고안(Recommendation)의 주된 목적은 센서스조작(census operation)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조사수집된 이들 센서스 결과가 국가가 요구한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가치를 보유토록 하는데 있는 것이며 가능한한 지역별은 물론 국제간의 자료의 비교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권고안은 특히 인구학적연구분석 또는 인구정책, 주택, 보건, 노동력, 교육, 식량 및 영양문제등에 관한 국가의 제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

가치가 있도록 제표하는데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

3. 본권고안의 내용은 I편, II편 및 부록(Appendix)으로 나누어 있으며 I편은 센서스의 조사항목, 정의 및 분류문제 등에 관하여 특별히 취급하였으며 제II편에 있어서는 주로 제표에 관계되는 것을 취급하였다. 부록에서는 필요한 속성분류(attribute classification)를 예시하는 제표에 관하여 개략적인 윤곽(outline)을 기술하고 있다.

4. 아시아지역(ECAFE)의 권고안 또는 세계의 권고안(World Recommendation) 이들 양자가 모두 권고조사항목 및 기타 필요항목을 내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권고안에 포함된 권고조사항목은 세계의 권고안에 포함(제시)된 권고조사항목뿐만 아니라 지역별 유의성(Significance)을 지니는 세가지 다른 조사항목을 내포하고 있다. 기타 유용(필요)항목의 리스트(List)에 관계되는 이들 두가지의 권고안간에는 양자간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하겠다.

5. 아세아의 권고안에는 권고항목만의 제표에 관하여 예시가 되었지만 「세계의 권고안」에 있어서는 권고항목과 기타 유용(필요)항목의 제표에 관하여 조사항목을 내포하는 제표에 있어서도 동일형식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

6. 인구센서스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세계권고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구센서스에 있어서 조사용어의 정의, 기본양식(features) 및

그의 이용 인구센서스의 계획, 기구 및 행정적 관리, 인구센서스에 있어서 표본의 적용 및 조사의 단위 (Unit), 장소 및 기간등에 관한 것이다.

제 I 편 인구센서스에서 조사 되어야 할 조사항목

A. 조사항목선정을 결정하는 요인

7. 조사표에 내포되어야 할 항목 (즉 정보가 각기 개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조사표질문사항) 을 다음과 같은 적절한 고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a) 센서스자료를 이용하게 되는 국가 (전국 및 지역별) 의 필요성여부

(b) 지역별은 물론 세계적 기준에서의 국제비교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c) 응답자가 조사표의 조사항목에 대하여 이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사의 가능성여부

(d) 조사, 자료처리, 제표 및 공표 (출판) 에 이용될 수 있는 국가의 총재원 (예산) 을 고려할 것 (사실상 이러한 예산이 센서스의 모든 가능한 범위를 결정함)

(1) 국가적인 필요자료의 순위

8. 인구센서스는 제반 필요자료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그 해당국가에 있어 가장 유용가치가 있다고 고려되는 항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이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방법을 구상하여 질문내용을 작성 그결과를 신뢰성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반경험에 의한다면 국가의 필요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사항목 및 국제표준에 의하여 정의된 조사항목을 적용하여 센서스를 실시할때에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와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센서스에 권고된 조사항목중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항목에 관한 결정은 주로 필요한 자료의 긴급여부와 또는 이러한 정보가 어떤 다른 자료의 출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얻어질 수 있으며 또한 용이한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는가의 여부, 즉 이런것들에 관한 합당한 평가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본권고안」에 포함된 조사항목 이외에도 당해 국가 또는 지역별로 관심이 지대한 항목을 센서스의 조사항목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많은 국가는 인정하게 된다.

(2) 국제간 자료비교의 중요도 (성)

9. 지역별은 물론 세계적(국제적)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서스조사표를 선택하고 구상할 경우에 이에 관한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국가간의 센서스목적은 언제나 양립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 권고안을 각국가의 경험 및 실행

적 과정을 기초로 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적 목적(요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과 정의를 적용하는 권고내용인 것이다.

10. 만일 당해국(어떤 일개국) 내에서의 특별사정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권고된 표준과 상이되는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센서스보고서에 다 이러한 차이점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고 국제적 권고안의 표준에 비하여 국가적 제반기준의 현황이 어떻게 달리 채택되었는가를 명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이다.

(3) 조사항목에 있어서의 적합성

11. 조사표상에서 질의될 조사항목은 응답자가 조사항목에 적당한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의사를 갖도록 해야되며 또는 확실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항목은 공포심이라든지 지역적 편견 또는 어떤 의심을 야기시키게 되는 항목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용이하게 응답할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하고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역시 피해야 된다.

더욱이 신뢰성있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각 질문의 어구자체가 반드시 전반적인 제사정을 참조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4) 예산의 편성

12. 조사항목의 선정은 센서스에 실제적으로 편성된 이용가능한 총예

산관계를 참작해서 주의깊게 다루어 져야 한다.

한정된 조사항목에 관한 정확하고도 효율성있는 자료수집(신속한 제표 및 공표가 수반되는)은 신속하게 수집되지도 못하고 제표되지 못하는 너무 과욕적(많은) 조사항목에 있어서 보다는 훨씬 유용한 것이다.

B. 조사항목의 리스트(List of Topics)

13.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조사항목은 일반적으로 10년간에 센서스경험을 통하여 대체로 국가 및 국제적인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가적인 기준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가장 효율성이 큰것을 채택한 것이다.

이 조사항목의 예시는 권고항목 및 기타 유용항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은 개개의 국가가 이러한 자료들을 다른 출처(Source)에서 수집할 수 없는한 그들의 인구센서스조사표에 모든 '권고항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

14. '기타 유용항목'은 개개 국가의 요구별(필요한 내용별)로 조사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특정 국가에 있어서 비록 '기타 유용항목'에 관한 관심이 더 크다할지라도 그 중요성에 비한다면 '권고항목'은 기타 '유용항목'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들 조사항목의 조사는 '권고항목'에 대한 정보가 수집 및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결정한 연후에 최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하겠다.

15. 다음에 언급된 각 조사항목은 개발도상의 국가는 물론 개발국 (선진국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통계부문에서 아직 저개발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많은 곤란을 갖게되는 항목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주의를 요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질의내용의 항목은 표본조사의 의한 인구조사가 훨씬 낡은 방법이 된다.

16. 편의상 '권고조사항목'은 조사표상에 표시 (기입) 되는 항목과 '유도 (파생적) 항목 (Derived topics)'으로 분류되며 전자는 제반자료가 조사표의 특정 질문에 의해서 수집되는 항목인 것이다. 비록 '유도 (파생) 항목'의 자료는 조사표에 기입된 제반정보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어떤 특정질문에 관한 직접적 응답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총인구'는 각 지역별 단위의 거주자로서 조사표의 표시 (기입) 된 인구를 총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유도 (파생) 적 항목은 자료처리과정에 있어서 제표구성요소로서 고려된다는 것이 더욱 확실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여하간 조사표는 이러한 정보를 미리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사항목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사표에 포함될 질의항목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게 된다.

①지역별특성 ②인적인 특성 및 ③경제적특성

17. 결과적으로 각 항목의 배열은 이들 각 조사항목간의 관계를 기초로 임의적으로 선택한 순서에 의해서 정리된다. 그러므로 이들

조사항목의 배열순서는 어떤 조사항목의 우위성이나 또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센서스 조사표상에서 적당한 질문을 진행할 수 있는 순위여하에 따라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18. 권고된 각 조사항목 다음의 ()내의 수자는 각 조사항목의 특징 및 정의를 기술하고 있는 C편의 절(Paragraph)을 참고토록 하고 있다. 각 조사항목의 분류는 기타 제표의 형태 및 필요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분류의 범위는 제2편(적당한 제표)에서 증명된다.

19. 권고조사항목 및 기타 유용(필요) 항목

A. 권고조사항목

(i) 조사표상에 직접 기입될 조사항목

(a) 지역별특성

- 1) 센서스의 조사장소 (20 절)
- 2) 통상거주 (Usual residence) 의 장소
- 3) 출생지 (25 ~ 31 절)
- 4) 거주기간 (32 ~ 34 절)

(b) 인적특성

- 5) 성 별 (35 절)
- 6) 연령별 (36 ~ 38 절)
- 7) 가구주 또는 가족과의 관계 (44 ~ 50 절)
- 8) 배우관계 (44 ~ 50 절)
- 9) 출생아수별 (51 ~ 55 절)

- 10) 생 존아수별 (56 ~ 57)
- 11) 문맹여부별 (58 ~ 61)
- 12) 취 학별 (62 ~ 63)
- 13) 교육수준정도별 (64 ~ 69 절)
- 14) 언 어별 (70 ~ 73 절)
- 15) 종 교별 (74 ~ 76 절)

(c) 경제적 특성

- 16) 경제활동형태별 (77 ~ 86 절)
- 17) 직 업별 (87 ~ 88 절)
- 18) 산 업별 (89 ~ 90 절)
- 19) 종업상의 지 위별 (고용주, 피고용자등) (103 ~ 111 절)

(d) 유도 (과생) 조사 항목

- 20) 총인구 (93 ~ 97 절)
- 21) 지 역별 (98 ~ 100 절)
- 22) 도 시 및 농촌별
- 23) 가 구 및 가족구성별 (103 ~ 111 절)

(b) 기타 유용 (필요) 조사 항목

- 1) 이 전거주지 (장소)
- 2) 농 업 및 비농업거주여부
- 3) 결 혼기간별
- 4) 시 민 권
- 5) 소 득 별
- 6) 농 지보 유 상 태
- 7) 부 양 가 족 수
- 8) 노 동 종 사 시 간
- 9) 부 업 관 계 별

- 10) 가내산업
- 11) 전문적 교육 및 직업적 교육
- 12) 신체상의 취업불능자

0. 조사 항목의 정의 및 내용

센서스의 조사장소 (A 1 항목)

20. 센서스시에 피조사자가 조사될 장소는 센서스실시일에 각자가 현존하고 있는 지리적장소인 것이다. (이 장소가 자기의 거주지든 아니든간에) 각개인 (피조사자) 이 조사되는 장소에 관한 정보는 제표계획상 필요한 소지역 (지리적) 별로 제표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 1편의 제표상 권고한 지리적분류에 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및 농촌별 지역구분은 물론 지역별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상주지 (항목 A 2)

21. 상주지는 피조사자가 항상 거주하고 있는 장소 (지리적) 를 말한다. 이 장소는 이 피조사자가 센서스실시 시에 조사된 장소 또는 그의 법적 거주지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일수도 있는 것이다.

22. 대부분의 피조사자들은 그들의 거주지에 관하여 응답할 때에 보편적으로 어떤 곤란이 없다고 하겠으나 때로 특수한 경우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즉 피조사자가 1 개이상의 거주지를 가졌을 경우) 이러한 경우란 2 개이상의 거주지를 갖고있는자 그들의 양친과 떨어진 (즉 양친의 집이 아닌) 학교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 군사시설내 (군영내) 에서 거주하는 군인으로서 그 군사시설과는 떨어진 개인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자라든지 또는 노동종사 (작업)

기간에 그들의 가구가 아닌곳에서 침식을 하고 있으나 각자의 작업
【노동】기간이 끝나면 본가에 돌아와 수일동안 있게되는 자들은 포
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관한 모든 사항의 취급은 센서스명세서에 그 예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23 . 이러한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은 어떤 피조사자가 얼마의 기간
동안 조사된 장소에 있었던 자이지만 그들 스스로 그 조사된 장소
의 거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곤란이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 자신은 장차 어느때에 가서 돌아간다는 관념때문에) 또
한가지 문제점은 일시적으로 고국을 떠난 자에게는 하지만 어느때에
귀국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곤란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예에는 현존하는 거주지 또는 불존거주지에 관한 시간적 한계를 확
실히 응답함으로써 어떤 특정장소가 그해당 국가에서 기준하는 일
반적경우(예)에 따라서 어느 거주지를 그 사람의 특정거주지로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게된다.

24 . 상주지에 대한 정보수집의 계획은 소단위의 지역의 지리적
구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 1 편 제표』에 관한 내용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리적분류에 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구역별 '인구의 크기별'은 물론 지역
별(행정적)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출생지 (A 3 항목)

25 . 출생지란 국가 또는 실질적으로 출생한 국가의 추정된 지리적
단위(지역)로서 정의되며 어떤 국가에서는 출생지를 그 개인의(자
신의) 모가 거주(그 개인의 출생시에) 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보고
하는 것이 보통이나 각 국가별로 각자가 사용하는 출생지에 관한

개념의 정의를 규정해야만 한다。

26 . 센서스 실시 국가 내에서 출생한자 (국내출생자) 와 타국에서 출생한자 (국외출생자) 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수집은 출생지에 관한 질문을 할 경우에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하겠다。

해외 (국외) 출생인구비율이 거의 무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출생인구의 출생지에 관한 정보수집만이 필요할 경우라 할지라도 모든 국가는 해외출생인구와 국내출생인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출생지에 관한 항목은 모든 사람 (피조사자) 에게 질문하는 것이 상례라고 하겠다。

비록 자기출생국 (Country of birth) 을 알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그 국가가 속하고 있는 대륙명 (Continent) 만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만일 조사항목의 질문을 국내출생 (native) 에만 한해서 할 경우 조사는 약간 간편하다고는 하겠으나 이러한 출생국에 관한 정보수집은 아주 경미한 비용의 추가만으로서도 정확한 조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27 . 본출생지자료 (정보) 는 국가에서의 적용은 물론이러니와 국제간의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센서스 실시 시에 현존하고 있는 국가 경계선을 기준으로 수집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생국의 정보이외에도 주요지역별 (major territorial division) 또는 특정지역 (Specific locality) 별로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고된 출생지자료는 현존 국경선에 의한 국가별로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다。

28. 이와같이 출생지보고가 세밀해야할 필요성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용의주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a) 영토 (속령) 를 잃은 국가 또는 얻은 국가별 해외출생자의 수 및 (b) 많은 해외특정지역 (수) 을 코딩 (Coding)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9. 후자 즉 이들 인구의 분포만을 알기 위해서는 출생지가 소속하고 있는 주요지역별 국가, 도, 시, 군 등에 관한 정보만을 수집하여도 충분한 것이다. 만일 필요할 경우에는 소단위의 지역 (Sub-division) 또는 특정지역별로 이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보는 주요지역 (major division) 별로 정확한 코딩 (Coding) 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다 소지역별 제표를 하는 데도 유용한 것이다.

30. 국내이민의 연구를 위해서 특히 인구수의 크기에 의한 주요구역 (도) (major civildivision) 별 국내 인구의 출생지자료는 적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내 출생지자료를 사용하여 순국내 이동량을 대도시별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며 시에서 출생한 사람, 동일 주요지역 (도) 내의 다른 어느 시에서 출생한 사람 및 타주요지역 (타도) 에서 출생한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

각 중소규모의 지역 (시, 군, 읍, 면) 별의 인구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것은 주요지역 (도) 별로는 물론 중소규모의 지역 (시, 군, 읍, 면) 에 대해서도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국내 인구의 출생지에 관한 질문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내인구의 이동이 많은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대개의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만큼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통계가 발전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소규모지역 (면) 의 경계 (boundaries) 가 변동하였을 경우는 많은 혼동을 초래케 되고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가지 용이하고 편리한 점에서 그 시를 자기의 출생지로서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31. 그러므로 국내인구이동 연구분석을 위해서는 출생지에 관한 자료를 거주기간 (duration of residence) 별로 정보를 수집하여 보완시켜야 한다. (32~34 절 참조)

거주기간 (A 4 항목)

32. 거주기간이라함은 센서스 실시 시 까지의 시간의 구간 (interval of time) 을 말하는 것이며 만년으로 표시해야 한다. 어느 일정 기간동안 각자가 살아온 (a) 센서스 시에 상주지 (Usual residence) 인 지역 (2.1 절 참조) (b) 그 상주지가 속하고 있는 주요지역 (도, 시) 을 말한다.

33. 거주기간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센서스 시에 상주지 (Usual residence) 와 세분류 (Cross-tabulation) 되었을 경우에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되며 만일 지리적 단위 (지역) 별 인구를 제시할 경우에 이들 인구를 그들의 상주지 (Usual residence) 별로 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센서스 시에 실제 했던 장소에 의해서 배열한다면 거주기간별 정보는 피조사자가 다만 방문의 목적으로 조사된 장소에 있었거나 또는 그 조사장소에 일시적으로 가 있었던 경우에는 부적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람은 그들이 최근 이민자로서 잘못 취급 (산정)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표에 비거주자 (non-residents) 로서 확인되어야 한다.

34. 거주기간에 관한 정보수집은 그 관계가 주요구역 및 지역 (locality)에 있어서의 거주기간 (length)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가구단위에 있어서의 거주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성 별 (A5 항목)

35. 각 개인의 성 (남 또 여자)은 센서스조사표상에 꼭 기입되어야 한다.

연 령 (A6 항목)

36. 연령이라함은 출생일자로부터 센서스 시까지의 추정 (산출)된 시간의 구간 (interval of time)을 말하는 것이며 만세 (양력)로 표시된다. 각 피조사자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하며 특히 15세미만의 인구에 대해서는 더욱 유의해서 조사해야 한다.

37. 연령에 관한 정보는 출생의 월일을 기록토록 하거나 최종 출생일자의 연령을 직접 질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첫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되는 것이나 문맹자를 피조사자로 조사할 경우는 이에 대한 응답이 아주 곤란하게 되므로 어떤 경우에서나 그들의 응답을 만세연령으로 환산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최종 출생일의 연령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정확성이 덜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아주 용이하게 근사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많은 부분이 정확한 출생일을 제시 못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절한 질문방법이라고 하겠다.

38. 연령에 관하여 직접적 질문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1년미만인 유아에 대한 정보의 보고 (reporting) 및 기록에서 많은 난점이 있는 것이다. (0세라고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1세라고 잘못 보고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같은 난점은 모든 어린애가 한살 (one year of age) 이라고 보고된 출생일자의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야기된다. (기타 남아지 인구에 대해서도 직접적 연령질문법만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의 가능한 접근법 (approach) 은 1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서는 만세로 연령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른 형태의 기입상 오차 (recording error) 가 생기게 된다. 즉 조사원의 잘못으로 월대신에 연으로 대체되는 경우라든가 예를 들면 3개월된 유아를 조사포에는 3세라고 기입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직접적 연령질문법을 사용할 경우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오차의 「소스」 (Source) 는 대개의 응답자가 전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양적 연령보고법 (음력이라든지, 띠 같은것) 에 의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10년2개월 또는 10년9개월 같은것을 11년 (세) 으로 보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고되는 연령은 우리의 현대적 개념상의 연령에 의한 것보다 대체로 1세가 더 부가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요인의 가능성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주의라든가 또는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곤란성 (difficulty) 은 이러한 1년의 상위차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의 최종 출생일을 묻는다 할지라도 제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주주 또는 가족과의 관계 (A7 항목)

39. 가주주라함은 기타의 가구 구성원에 의해서 그 가구내에서 그렇다고 (가주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 (dependency) 통계의 개념상 더 필요한 정의를 말한다면 가구의 경제적 유지를 위해서 주된 책임 (Chief responsibility) 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경제적 책임여부의 결정을 하는 정보수집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정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40. 가주주 및 가구 구성원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면 된다.

- (a) 가주주
- (b) 가주주의 배우자
- (c) 가주주의 아들
- (d) 가주주 아들의 배우자

- (e) 가구주의 손자 및 손손자
- (f) 가구주의 양친 또는 가구주 배우자의 양친
- (g) 가구주의 기타 친척
- (h) 가구고용인
- (i) 가구주와 관계가 없는 기타의 사람

제반정보수집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위의 제분류가 너무나 세밀하다고 생각될 경우 (f) 및 (h)의 항목 (Categories)은 제외할 수 있고 (i)의 항목은 가구주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즉 이들 양항목 중 그중의 어느 것에도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가구주의 기타 친척' 또는 '가구주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적당히 동일한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41. 가족주 (head of the family)란 (a)센서스가족 또는 핵가족 (family nucleus)의 기타 구성원에 의해서 그렇다고 (가족주)인정하는 사람이거나 (107-112 절 참조)

또는 (b)특정 요구 (필요성)를 충족시켜주는 가족 또는 핵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

42. 첫번째의 정의를 적용할 경우 가족주란 조사시에 직접적인 질문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번 정의를 적용할 경우 가족주란 자료처리과정 (at the processing stage)에서 성별, 연령 및 배우관계 (marital status)를

기준으로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또는 단순히 한가족의 가구주가 된다는 인식에 의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43. 가족구성원과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구별해야 될) 관계는 센서스에 적용된 가족의 정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배우관계 (A 8 항목)

44. 배우관계라함은 혼인법 또는 국가의 관습에 관계되는 각 개인의 신분관계(status)을 말한다. 배우관계에 관한 자료는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a)미혼 (b)결혼 (c)미망인 (d)이혼 (e)기혼자이나 법률상 별거하고 있는자

45. 어떤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습적결합(customary unions) 즉 하나의 법이긴 하지만 관습법 하에서 이루어진 추가적 결합(extra legal unions)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것이며 후자인 추가적 결합은 흔히 현재적(합의상)결합으로 불려지고 있다. 또한 어떤 국가의 경우는 현재 그들의 배우자와 같이 살고있는 결혼자 및 그들의 배우자와 별거하는 결혼자를 구분하기를 바란다.

46. 최근의 이혼에 관한 사항은 그 해당국가에 있어서의 이들 집단 상대적 크기 여부에 의존되는 것이며 이집단의 크기가 유의적(Significant)이라고 고려될 경우에는 추가항목(조사)을 포함시켜야 되지만 이 크기가 무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결혼무효가 있기 이전의 그들의 배우관계별 신분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한다.

47. 어떤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구별하는데 있어 많은

곤란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그것은

(a) 형식적 결혼 및 실존적결합(defacto unions)

(b) 법률상으로 별거하고 있는자 및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으나 실제 상으로는 별거하고 있는자

(c) 법률상으로 별거된자 및 이혼된자 만일 이상과같은 경우중 본권 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우관계의 분류를 필요로 한다면 (따른다면) 제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항목의 구성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하여야 한다.

48. 이들 배우관계에 관한 충분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이 정보는 법적인 최저연령 또는 국가의 관습상의 연령에 상관없이 결혼자의 전반연령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기타 국가에서는 상이한 최저 연령에 의해서 결혼한자들이들 인구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개의 국가에서는 어떤 특별한 경우(이유)때문에 법률상의 최저 연령이하에서는 결혼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배우관계자료의 국제간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관계에 관한 제표를 연령별로 그다지 세분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도 15세미만의 인구 및 15세 이상 인구로 구분하여 두어야 한다.

49. 어떤 특정국가에 있어서 관습에 관계되는 추가적 정보(축첩, 일부다처, 일부다부의 배우관계, 미망인(재산을 상속받게된), 등의 수집은 국가적자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아주 유용하다.

예를들면 어떤 국가에서는 각 결혼자에 대한 배우자수를 수집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정보수집에 경우 제표의 수정은 가능한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기본 분류의 구형(framework)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된다.

50. 여기에 언급된 배우관계에 관한 항목은 안정도의 변화에 따르는 실제적 결합의 범주(Categories)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수도 있지만) 또한 이들 항목은 결혼이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실제적결합 (defacto Unions)과 혼합된 형식상 결혼의 우위성을 적절하게 기입하지 못한다. 이러한 배우관계정보는 출산력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국가간에 실재하는 다른 경우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국제권고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배우관계조사를 할려고 하는 국가는 각자에 대한 형식상 배우관계결합 및 각형태의 결합에 대한 기간에 대하여 별개의 자료수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만 된다.

출생아수 (A 9 항목)

51. 출생아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는 "센서스" 시까지의 부인의 생활동안에 출산한 어린애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사산은 제외함)

조사표상에 기입되는 수는 적자이든 비적자이든 간에 또는 현재 출생이든 결혼이전 출생이든 간에 그리고 이들 어린이들이 센서스시에 생존하고 있거나 사망했든 간에 이들에 관계없이 출산된 어린애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52. 출산된 어린애들의 총수에 관한 자료는 배우관계의 신분에 관계없이 15세이상의 부인전체에 대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미혼부인에 대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15세이상

부인의 결혼 (합의상의 결혼을 포함하는) 자, 미망인, 별거 또는 이혼에 관한 자료는 수집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수집된 부인집단에 관한 자료는 결과분석에 나타나는 어떤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센서스보고서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53. 출생아수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응답중에 한편으로는 실제상 사산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시에 사망했던 어린애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총출산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는 출생아수에 관한 질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일련의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 (a) 총자녀의 수 (사산을 포함하는)
- (b) 출생하여 사망한 어린애수
- (c) 현재 생존하고 있는 어린애수

이러한 질문의 응답에서 일어나는 일치성의 부족때문에 응답에 오차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 문제화되는 점이다.

54. 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절차 (방법) 는 전수 조사에 있어서는 일종의 시간의 소모며 권고할만한 것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에 추가로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당하게 연장시킨다고 고려될 경우에는 출산자료는 여자인구의 표본에 대해서만 수집하여야 된다.

55. 경상적출산력(Current fertility)에 관한 정보수집(예를 들면 조사일전의 12개월동안에 출생한 어린애의 수)은 "센서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권고할만한 것이 못된다.

이들 항목은 조사기간중에 나타나는 추가적 제반문제때문에 표본조사중에서 조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적합한 출생신고자료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자료가 긴급히 요청될 경우 또는 그 항목을 취급하는 별개의 표본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항목을 센서스시에 센서스의 표본을 기초로 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현재 살아있는 어린애 (생존아동) (A 10 항목)

56. 생존아동에 관한 정보는 각 해당부인이 출생한 어린애들중(그들이 적자 또는 비적자이든 현재에 출생하였거나 또는 결혼이전에 출생하였든 간에) "센서스"시까지 생존하고 있는 전체 어린이들을 그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포함시키게 된다.

조사표에 기입된 어린애수는 그의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는 어린애는 물론 동일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곳에서 살고있는 어린애라 할지라도 이들을 포함시키게 된다.

57. 생존아동의 총수에 관한 자료는 총출생아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대상의 부인과 동일한 집단의 부인으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이들 집단은 배우관계의 사항에는 관계없이 오히려 15세이상의 모든 여자(부인)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여자(부인)에 대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할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

한도 15 세 이상의 여자중 결혼한 부인 (합의상의 결혼을 포함) , 미망인, 별거 또는 이혼에 관한 사항만은 수집되어야 한다.
만일 출생아수에 관한 정보는 여자의 표본 (Sample of Women) 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될 경우 생존아에 관한 자료도 역시 동일표본에서 수집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맹여부 (A 11 항목)

58. 문맹여부는 문자를 읽을 수 있고 쓸 줄 아는 능력여부로서 정의되는 것이다. 문맹여부의 자료는 문맹자 및 비문맹자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수집되는 것이며 문자의 이해는 물론 읽고 거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관하여 간단히 쓸 줄 아는 사람은 비문맹으로 간주된다. 또한 문맹자라 함은 이와는 반대로 읽을 수도 없을뿐 아니라 매일 생활에 관하여 간단히 쓸 수 없는 사람을 말하게 된다.

위와같은 정의는 UNESCO의 1958년 12월 제 10 차총회에서 권고된 것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한 수치나 자신의 이름 정도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문맹자로 간주하게 된다. 즉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줄을 모르고 다만 기억가능할 정도의 간단한 의식적 구절만을 읽고 쓸 줄 아는가 역시 문맹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59. 사용하는 어떤 특정언어 또는 기타 언어는 문맹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닐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사표상에도 고려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수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언어의 정보가 교육정책의 결정이 중요하므로 유용성이 있는 언어에 관한 추가 조사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60. 문맹여부에 관한 자료는 10세이상인 전인구에 대해서는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인층의 문맹여부에 관한 자료의 국제비교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비문맹자에 대한 제표를 연령별로 세분류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15세미만의 인구 및 15세이상 인구를 구별하여야만 한다.

61. 문맹자들이 이러한 사실 (즉 자기 자신이 문맹자라는) 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반발 (reluctance) 과 조사기간 동안에 문맹자 여부에 대한 검증 (test) 을 통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난점으로 인해서 수집된 자료의 정도는 그다지 높지 못할 경우가 있게 된다.

만일 이러한 결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될때는 센서스보고서에 이러한 점의 가능성정도를 언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문맹여부의 결정에 어떤 검증법 (test) 을 적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만 되는 것이다.

취학여부 (A 12 항목)

62. 취학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UNESCO의 국제표준교육통계에 관한 권고안에서 학생에 대한 정의 및 정규, 비정규 (Post-time) 취학간의 구별) 교육수준별로 계통적 가르침 (instruction) 을 하는 어떤 정규 교육기관 (공·사립을 막론하고) 에 취학하고 있는 자로서 정의된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교육 (국가에서 인정 한 교육구조의 부분이 아닌) 은 즉 공장에서의 훈련과정같은 것은 취학으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63. 취학에 관한 정보수집은 첫째 단계수준의 교육 (즉 국민학교) 에서부터 24 세이내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 만일 비교적 연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학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24 세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된다.

교육정도 (A 13 항목)

64. 교육정도라 함은 교육을 받은 국가의 훈련제도하에서 자기가 이수한 최종 교육수준 (최종학교) 내에서 최고학년 (highest grade) 을 말하게 된다.

국제적 관례상 한 학년이라는 것은 보통 1년의 교육정도에 수강단 계인 것이다.

65. 교육정도에 관한 정보수집은 취학하게 되는 연령층 (일반적) 에

있는자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음에 명시된 교육정도별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a) 첫 단계의 취학 (국민학교) 이전의 교육 예를들면 육아원, 유치원, 유아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첫 단계수준의 교육 (국민학교) 과정에 들어 가기에는 아직 연령이 미달되는 어린애들의 교육 상태를 말한다.

(b) 첫 단계수준의 교육 (국민학교, 초등교육과정) 이 수준의 교육단계에서 주로 하는것은 앞으로의 배움을 위한 준비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c) 제 2 단계의 교육수준 (예를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이에 준하는 수준 정도의 교원양성소) 이라함은 제 1 단계의 교육과정에서 최소한도 4년 이상의 학업에 종사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 (또는 전문적) 교육 또는 일반적 전문적교육 (양자의 교육정도) 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d) 제 3 단계의 교육수준 (예를들면 대학교, 사범대학, 고등직업 (전문) 학교)이라 함은 제 2 단계수준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지식수준에 도달하였다는 보장이 필요하여 이러한 정도의 조건구비가 있음으로써 이 단계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입학이 허가된다.

(e) 특수교육이라 함은 육체 및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사회 또는 기타 면에서 부적격한 아동에게 제공되는 모든 일반적 또는 직업적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보편적으로 교육수준별 또는 학년별로 분류하지 않는다.

66. 제 1 단계 교육 및 제 2 단계 교육 수준에 관한 교육형태별 소분류는 이러한 형태분류가 가능한 제국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분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제 2 단계 교육수준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교육: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하여금 직접으로 일정 상업 또는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나) 직업적교육: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일정상업 또는 직업에 직접적으로 적합하도록 준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 교사(원) 훈련: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사가 되기에 직접 적합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67. 제 3 단계 교육수준의 분류(소)는 다음과 같다.

(가) 학위를 주게 되는 대학교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교육

(나) 비대학교에서의 사범교육

(다) 비대학교에서의 기타교육

68. 국제적 정의 및 국제분류에 기인되는 필연적 오차는 제표와 관련시켜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오차는 주로 국가교육제도의 특별한 특성에서 야기

되는 것이다. 만일 국가의 필요성 때문에 어떤 특정국가내의 교육 과정에 적용되는 지침에 의해서만이 전적으로 이들 결과를 공표할 경우 이 공표자료는 국제비교가 용이하도록 그들 국가의 교육 체도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술은 물론 그 특징을 수반시켜야 된다.

69. 센서스시에 그 나라의 교육제도가 중요한 구조적 변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있거나 또는 최근에 변동되었던 국가에서는 졸업학년 또는 교육수준보다는 오히려 취학연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는 전자 (즉 취학의 연수) 가 전인구에 비하여 더 비교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이다.

언어 (A 14 항목)

70. 센서스에서 수집되어야 할 언어에 관한 자료는 세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모국어 (Mother tongue)

모국어 (모어) 라 함은 어렸을 때에 각 개인의 가정에서 상용으로 쓰이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b) 상용어 (Usual language)

현재 국가내에서 각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아주 빈도가 높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c) 1개이상의 지정된 언어 (designated languages) 를

있는 능력

71. 이와같은 각각의 정보는 상이한 연구분석 목적에 이용되게 되며 각 국가는 이러한 형태의 언어에 관한 정보가 그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표에 관한 국제비교성 문제는 이와같은 조사항목에서 수집될 자료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72. 상용어 또는 모어에 관한 자료의 편찬은 단순히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서 중요한 각 언어에 대한 숫자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73. 언어에 관한 정보수집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5세미만의 어린애에 관한 제표결과에 의해서 아직 말할줄 모르는 어린애들에 관한 언어의 결정에 확실한 기준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 교 (A 15 항목)

74. 센서스에서 종교라 함은 (a) 믿음이 조직화된 집단 (organized group) 에 의해서 나타나든 아니든 간에 이에 관계없이 종교적 믿음 또는 정신적 믿음 (Spiritual belief) 이거나 선호성으로서 정의될 수 있으며 교의 (tenets) 를 갖고있는 조직화된 집

단으로서의 인지 (affiliation) 를 말하는 것이다. 센서스에서 종교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각 국가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종교에 대한 적절한 용어의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이 자료를 공표할 때에는 이에 적용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해야만 된다.

75. 또한 이러한 종교에 관한 항목 (조사) 에 의해서 수집되는 자료의 상세성 여부는 그 국가가 요구하는 필요성 (requirement) 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각 개인 (즉 피조사자) 의 종교에 관해서만 질문하면 충분하다 하겠으나 한편 이에 대한 질문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응답자로 부터 그들의 종교에서 고수하고 있는 특정분과 (Particular sect) 를 규정하도록 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76. 국제 비교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물론 국내의 모든 종교 또는 그 분파에 관해서 잘 알지못하는 본 자료이용자의 편의상 각 분파는 이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의 소 (즉) 범주 (Sub-Category) 로서 표시하도록 자료의 분류를 해야 한다.

또한 어떤 특정국가 또는 지역별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 또는 교파의 교의에 관한 간단한 진술은 이러한 종교의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경제활동의 형태 (A 16 항목)

77. 경제활동의 형태라 함은 정상적 경제활동에 대한 각 개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경제활동 인구의 최저 연령에 상당하는 자 및 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수집하게 되는 것이며 이들 각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해서 경제적 특성별로 제표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78.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보수 여자가족 종사자, 처음으로 구직코사 하는 젊은층의 사람 및 한 직장에서 은퇴함에 따르는 연금을 받고 동시에 타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특히 분류하기 어려운 집단에 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해야만 한다.

센서스보고서는 이러한 집단에 관한 분류에서 적용했던 상세한 내용의 정보를 제시해 주어야 된다.

79. 센서스 질문항목중 경제활동조사에서 채택되는 최소연령의 한계 (즉 경제활동인구에 최저연령 수준)는 각국의 제반여건에 따라야 하나 보편적으로 15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노동력의 대부분이 농업에 집중되는 국가 (일반적으로 연소 연령층이 많이 참가하게 되는 경제활동형태)는 고도화된 산업국가 보다는 그의 연령한계가 더 낮게 채택될 것이다.

본 자료의 제표는 국제비교상 15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를 구별해서 연령 분류를 해야 한다.

80. 센서스의 경제활동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적 특성에 관한 경제활동기간 (time reference) 의 채택은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다.

그 기간 (경제활동기간) 은 일주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경제활동기간을 기초로 하는 분류가 연간 (Year-round period) 의 경제활동을 반영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특히 고용의 계절적 변화 (모형) 이 심하고 규칙적으로 경제활동표본조사를 일년동안 계속해서 실시하지 않을 때는 보다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의 조사대상기간을 확대 시킴으로써 일반적 (usual) 경제활동의 특성에 관한 보완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완적 정보는 상이한 조사기간 (경제활동에 관한) 의 결과 (효과) 를 확인해 보기위해서 짧은 기간에 의한 조사결과와 보다 장기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이 자료의 유용도는 상당히 높은 것이 될 것이다.

81. 경제활동인구라 함은 조사기간동안에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해서 노동을 공급한 모든사람을 성별에 관계없이 포함시키게 된다. 이것은 일반시민의 노동력은 물론 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나 본자료를 공표할 경우에는 군인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의 범주 (Category) 로 취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군인에 속하는 범주는 필요한 경우에 총노동력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일반노동력이라 함은 조사기간 동안의 취업자 및 실업자 모두를 포함하

는 것이다.

이러한 취업자 및 실업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구별한다.

(a) 취업자 (고용자)

82. 취업자라 함은 가족종사자를 포함해서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조사기간 동안 노동을 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취업자이기는 하지마는 병이나 부상 또는 사업상의 분쟁, 휴가, 기타연가·결근등과 일지불순·기계고장등과 같은 일시적 이유 때문에 잠시 동안 비노동상태에 있는 모든자는 이에 포함된다.

(b) 실업자

83. 실업자라 함은 조사기간동안 노동을 하지 않았던자로서 이익 또는 현금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자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기간동안 일시적 질병이나 조사기간에 가까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 (arrangement) 또는 일시적이나 불확실한 해산 (즉 임금을 지불하지않는)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않는 자들도 실업자에 포함된다.

취업의 기회가 극히 한정되어있는 경우 노동을 하지 않았던자.

취업코자 하였지만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새로운 취업기회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던 자도 실업자에 포함된다.

이 실업자에 대한 재료의 편찬은 이전에 전혀 취업해본 경험이 없는자와 취업경험이 있는자를 구별해야 한다.

84. 인구를 경제활동의 형태별로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경제활동참가

자 (취업자) 는 항상 비경제활동인구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취업 및 실업자는 예를 들어 비록 이들이 학생 또는 가내 종사자라 할지라도 비경제활동인구와 분리해야 하는 것이다.

85. 비경제활동인구는 다음과 같은 자를 범주에 포함시킨다.

(a) 가내종사자 : 성별에 관계없이 그들 자신의 각구내에 종사하여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자로서 예를들면 가사 및 어린애들을 돌보는 주부 및 기타 이와 관계되는 종사자 (relatives) 를 말한다.

(b) 학생 : 성별에 관계없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제통적교육제도의 단계적 교육수준을 위해서 정규학교과정에 다니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한다.

(c) 소득수입자 (Income recipients) : 성별에 관계없이 재산 (Property) 또는 기타투자, 특허권사용료 (royalties) 또는 이전의 경제활동에서 연금을 받는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사람) 을 말한다.

(d) 기타의 사람 : 성별과 상관없이 공적원조, 또는 사적인 도움 (Support) 을 받고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및 통학하고 있는 어린애들과 같은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모든 사람

86. 개별적으로 볼때 어떤자는 한개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범주

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어떤 자는 학생임과 동시에 가족
종사자일 수도 있다.)

한개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자를 조사표상에 기록할때의 확실한 우선
순위를 위해서 조사명심서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두어야 한다.

또한 대개의 사람들은 그들이 속하고 있는 범주내에서도 그들에게
적용되는 첫째의 것에만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센서스조사표
상에 미리 우선순위를 두어 해당되는 범주를 제시하는 것에 유의토록
해야한다.

직업 (A 17 항목)

87. 직업이라 함은 산업별 또는 노동계급별분류 (고용주·피고용자등)
에 관계없이 취업자 또는 이전에 취업한 일이 있는 실업자별로 경
계특성 (80절을 참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이미
확정된 조사기간 동안에 일을 한 노동의 종류에 관계되는 것이다.

국제비교상 각국가는 국제노동국 (ILO)에서 발간된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의 최근판에 의해 이러한 자료를 편찬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제표준직업분류로 전환할 수 있
도록 최소한도 본분류의 소분류에 해당되는 고용분류의 범주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들 자료가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와 일치하게 분류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차이점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88. 만일 조사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개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려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산 업 (A 18 항목)

89. 산업은 경제특성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일정조사기간 동안 경제활동인구가 노동한 (또는 실업되었을 경우는 이전에 노동한) 사업체의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것이다.

국제비교상 각국가는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에 의해서 본자료를 편찬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 적용된 분류의 범주가 최소한도 ISIC 또는 본 분류의 대분류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만일 국가의 자료가 ISIC에 의해서 분류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이점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청된다.

90. 부업 (Secondary occupation) 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경우 (88 절 참조) 에는 부업과 관련되는 산업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여야 한다.

종사상의 지위별 (고용주 · 피고용자등) (A 19 항목)

91. 종사상의 지위 (고용주 · 피고용자) 는 고용에 관계되는 경제활동인구 개인의 신분에 관계된다. 즉 어떤 개인이 아래의 정의와 같이 고용주 · 자영업주 · 피고용자 · 무보수가족종사자 또는 생산자조합의 회원 여부에 관계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고용주: 자기 자신의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독립적으로 어떤 직업 또는 사업 (상업) 에 종사하는 자로서 한사람 이상의 피고용자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어떤 국가에서는 자기업체에 고용되는 사람수별로 고용주를 구별 (분류) 하고 있다.

(b) 자영업주(자) : 자기자신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어떤 직업 또는 사업(商業)에 독립적으로 종사하여 피고용자를 소유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c) 피고용자 : 공적 또는 사적으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임금·봉급·코미션·팁(Piece-rates), 또는 현물지불로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d) 무보수가족종사자 : 보수를 받지 않고 동일가구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경영되는 기업체에서 일정 최저시간동안 일하는 자를 말한다. 만일 (e) 범주로 분류되는 생산자조합의 회원들이 경영자인 기업체의 무보수가족종사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들 무보수가족종사자는 별개의 소분류(Sub-Group)로 분류되어야 한다.

(e) 생산자조합원 : 설립된 산업체(industry)에 관계없이 생산자 조합의 적극적 활동을 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들 집단의 수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본분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생산조합의 회원은 다른 항목으로 적절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f) 종사상의 지위별로 분류가 불가능한 자 : 종사상신분의 미상 또는 불적절하게 기입된 유경험노동자 및 이전에 취업해 보지 못한 실업자를 말한다.

92. 부직(Secondary Occupation)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경우 (88 절참조)에는 이에 관계되는 종사상의 지위별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게 된다.

총인구 (A 20 항목)

93. 일국의 총인구중에서 어떤 특정집단의 인구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것은 그 해당국가의 제반사정과 요구에 의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인구구성에 관해서는 어떤 권고가 필요치 않겠으나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총수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여야 된다. 또한 그 인구수가 현주 인구 또는 상주인구로서는 충분한 것이 못된다. 이들 용어는 그 구분에 있어서 정확한 개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94. 총인구의 기술 (description) 은 다음과 같은 각 집단에 관한 사항 즉 다음 각 항목이 총수에 포함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어떤 크기의 집단이 조사되었는가의 여부 또는 그 집단의 크기가 추정치인가의 여부와 더불어 각집단의 크기 (인구수) 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만일 총인구중에서 어떤 집단이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집단의 크기를 0로서 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것은 특히 (a)(b)(c) 및 (d) 집단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95. 여기에 고려되는 집단이라함은 다음과 같다.

(a) 유목민

(b) 원거리지역에서 사는 자

- (c) 군인, 해군 및 외교관과 국외에 거주하는 자의 가족
- (d) 상선원 및 국내 거주자이나 센서스시 바다에 나가 있었던 어부
(승선자의 거처 이외에 다른 거주지가 없는 자)
- (e) 계절적 노동자로서 다른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
- (f) 타 국가에서 일하기 위하여 매일 국경선을 왕래하는 거주자
- (g) 타 국가에서 노동을 하나 (c)(e) 및 (f)에 포함되지 않은 거주자
- (h) 일시적으로 국내에 없는 자로서 (c)(g)에 포함되지 않는 거주자
- (i) 외국의 군인, 해군 및 외교관과 그들의 가족 (국내에 살고 있는)
- (j) 계절적 노동자로서 일시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
- (k) 국내에서 노동하기 위해 매일 국경을 왕래하는 외국인
- (l) 국내에서 노동을 하나 (i)(j) 및 (k)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국인
- (m) 일시적으로 국내에 있는 자로서 (i) 및 (l)에 포함되지 않은 외교인
- (n) 센서스시 항구내에 선에 타고 있는 transients

96. (h) 및 (m) 집단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것이 일시적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97. 과소 또는 과대조사 때문에 총인구를 수정한 국가에서는 조사치와 추정치(수정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표의 세분화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조사된 인구수를 기초로 하여야 될 것이다.

지 역 (A 21 항목)

98. 센서스자료의 이용상 지역 (locality) 이라함은 주민들이 이웃한 건물에서 살고 있으며 일정한 명칭 또는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위치를 갖는 특정한 인구집단 (population cluster) 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인구가 조밀하게 살고있는 장소 인구가 밀집한 센타 (centre) 정주민 (Settlement) 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 광산의 캠프 (Camps), 목축농장 (Ranches), 농장 (farms) 시장가 (market town) 촌락, 읍, 도시 및 기타 많은 인구집락지 (위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를 가트키게 된다. 이러한 정의에 관한 사업은 센서스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며 이들 자료를 이용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99. 위에서 정의한 지역이라함은 아무리 적은 규모라 할지라도 일국내의 지역과는 혼동치 않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 두개가 일치될 수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적은 규모의 구역이라 할지라도 2~3 개의 지역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시 또는 읍은 2개 이상의 구역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들은 별개의 지역으로 보다는 오히려 일개의 지역의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00. 일국의 대규모지역이라함은 흔히 도시단 (Urban agglomeration) 의 일부분으로서 시 또는 읍을 적절히 포함시키게 되며 또한 교외 변두리 또는 그의 경계선밖 에 위치하나 그의 경계에 접근하고 있는 인구조밀지역은 포함시킨다. 그러므로 도시단은 지역과 동일하지 않으나 1개이상의 지역을 포함하는 추가지리적 단위 (additional geographic unit) 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 및 농촌 (A22 항목)

101. 도시 및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특성에 관한 국가별 차이 때문에 도시 및 농촌인구의 구별은 아직도 모든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유한 정의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국가는 자기대로 어떤 지역이 도시이고 어떤지역이 농촌이라는 정의를 갖게 된다.

102. 국제상의 비교와 더불어 국가를 위해서도 분류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단위는 지역이다. (98 절의 정의 참조)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국의 축소규모별 행정적 구분(역) (administrative division) 이 가장 적절한 단위라고 하겠다.

가구 또는 가족구성 (A 23 항목)

103. 가구구성이라 함은 가구주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응답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도 (파생) 조사항목을 말하는 것이다.

사적 (개인) 가구구성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검토될 수 있는 것이지만 센서스의 목적때문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형태는 개인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핵가족 (family nuclei) 의 수가 되는 것이다. (109 절에 정의된 바와같이)

104. 보통가족 및 핵가족이라함은 가구주와의 관계를 질문하는 응답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구 및 가족은 상호간 대체될 수 없는 하나의 별개의 실체 (entities) 가 되는 것이다. (108 절참조)

105. 일개의 가구는 (b)한사람의 가구일수도 있고 즉 기타사람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가구의 일부분을 이루는) 과의 결합없이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것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 자신의 식생활을 해결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게 된다.

또는 수인의 가구일 수도 있다.

즉 식생활 또는 기타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두 사람이상의 집단을 말한다. 이 집단 (가구) 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을 풀제로 사용하게 되며 과소의 정도는 있다 할지라도 공동적 예산을 기초로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들은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들 끼리 또는 비인척관계자끼리도 형성될 수도 있으며 또한 양자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106. 군사시설·교도소·학교기숙사·병원 및 종교기관등에 있는 사람들은 가구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호텔·또는 하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개가구 또는 수인의 가구구성원과 구별할 수 있다.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것들을 자기 스스로 구비하여 공급하는가의 여부를 기초로 하여 기숙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생활하지않는 숙소의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101. 가족이라함은 혈족 양자 또는 결혼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관계가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게 된다. 가족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적용될 관계의 정도(친척 규정의 정도를 말함)는 본자료의 적용도에 의존하게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정확하게 세계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일치되지 못한다.

108. 한 가족이라함은 일개이상의 가구를 내포할 수 없으나 일개의 가구는 한사람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되며 일개의 가족이 한사람이상의 비친척인 사람과 함께 가구를 구성하게되고 또는 전적으로 비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된다. 실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가구는 어린애가 없이 결혼부부로 구성되는 단일가족이며 양친이나 또는 그들중 한 사람과 이들의 미혼자녀들로서 구성된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현상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세서스의 제표는 이것이 가구에 관계되는가 또는 가족에 관계되는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109. 103 절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가족의 구성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족을 결혼부부 또는 양친·동일가구내에 있는 이들의 자녀(미혼) 들로 제한하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결혼상의 핵가족은 다음과 같은 결합에 의해서 구성된다.

(a) 어린애가 없는 결혼부부

(b) 결혼한 적이 전혀없는 그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결혼부부

(c) 결혼한적이 전혀 없는 그들 자녀(그들 자녀중 한명도 결혼하지 안한) 와 양친중 어느 한사람과 같이 살고있는 경우

합의상의 결혼(동거생활)에 의해서 살고있는 부부도 결혼부부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110. 핵가족이라함은 대부분의 가족구성을 내포하게 되는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결혼한 형제나 자매가 그들의 양친없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든지 미혼조카들과 같이 사는 고모 또는 아주머니와 같은 상이한 구조(structure)의 가족을 구성하는 기타친척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은 앞에서 언급했던 핵가족 예를 들면 결혼한 아들이라든지 그 남편의 가족과 같이 살고있는 과부같은 핵가족의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그러므로 핵가족은 전가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때문에 제국가는 각기 자기국내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가족에 관한 정의를 확대할 것을 바라게 된다.

111. 가족 및 핵가족은 보통 가구주의 이름 및 가구주와 관계를 기준으로 자료처리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주 (head of families) 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가정을 기초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조사시에 직접적인 질문을 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112. 아무리 적은 규모의 핵가족이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2명의 관계된 사람이 내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핵가족수에 의한 가구구성의 분석은 다수인가구에 대해서만 착수될 필요가 있다.

109절에 제시된 핵가족의 정의에 따라서 한 남자와 처 이들의 미혼자녀 및 결혼한 딸과 그 여자의 남편으로서 구성되는 한개의 가구는 2개의 핵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제 II 편 인구센서스에서 작성되어야 할 제표

(Part II Tabulation to be prepared in a
Population Census)

A 제표의 범위 및 목적

113. 제국가는 경제 및 사회발전을 추진하고 모색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계획을 설정할 때 필요한 계획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인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자료의 출처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통계조사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사스시에 최적의 비용으로서 각각의 제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점차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계획상의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조사항목수를 비록 단순하지만 유의적인 것으로서 최대한도로 제한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권고사항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첫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개발계획을 위해서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를 내포할 수 있는 제표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14. 본편에서 제시된 센서스제표는 19 절에서 복수있는바와 같이 **“권고된”** 조사항목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가지 예외로서는 이들이 모든 국가에서 작성되어야만 하는 **“기본적”** 제표인 것이다. 또한나의 추가적 (Additional) 제표는 동일조사항목을 사용하는 **“기본적”** 제표보다는 약간더 전문화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이며 만일 이들추가적제표가 모든 적절한 **“기본적”** 제표작성에서 방해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115. 각제표에 따르는 부수사항은 각제표에 의해서 제공된자료의 적용원칙에 관한 진술이다. 필요한 속성분류를 제공하는 한가지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제표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같은 표의 「Sketches」는 다만예시적이며 사실상 표의 구성은 기타의 많은 요인에 의존되어야 할것이기 때문에 제표에 대한 형태를 권고한다는것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116. 여기에 제시된 제표는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기는하지만 기타 가치있고 실용적인 제표를 센사스계획에 포함시킬수있는 것이다. (더욱 유용적인 제표계획을 이룰수 있도록) 이와같은 기타의 제표는 「권고」 또는 「기타유용」 조사항목에 대한 정보를 더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또는 국가에 따라서 유의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추가조사항목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도 있다.

117. 세밀하고도 추가적인 제표작성의 가능성은 대부분 자료처리적용방법에 의존되는 것이며 전자자료처리의 적용은 제표작성을 더 신속하게 할수있으며 넓은 자료처리방법에 의해서 이루어 질수있는 것보다는 더 세밀하고 많은양의 자료가 포함되는 제표를 할수있다.

118. 여기에 권고된 제표는 최종 제표로서는 적절한것이라고 할수 있으며 동일주제하의 사전작성 제표상의 제표를 할 수 있는정도의 크기는 자료처리가 완성될수있는 신속성 (기계적) 및 자료사용에 대한 긴급성에 의존된다.

119. 각제표에 대한 내용 (규정) 중에서 지리적분리가 포함되고 있으며 이것은 각국가의 구역별 (Civil division) 형태에 대한 지침

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각국가의 구역별 형태에 대한 지침으로서
제표별로 제공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도
시 및 농촌에 대한 적절한 분류를 들 수 있다.

120. 물론 제국가는 최소한도 추가지역에 대한 몇 가지 제표작성을
바랄 것이다 (예를 들면 본 권고안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적은 구역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지역 (economic region))

121. 특정소지역별 (Sub-national area) 제표는 각 지역 (21 절참
조) 의 상주인구 (resident population) 을 기초로 하거나 또는
센서스에 각 지역에서 조사된 인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할 수 있다.
상주인구에 관한 제표는 이들 제표가 입법기관의 대표자배분 (적절한
선정) : 국내인구 이동의 측정 거주지역 동태통제의 계산 및 학교
또는 주택 등과 같은 서비스기관의 계획·관리에 적절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 유용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상주인구에 있어
서만 타당성을 갖게 된다.

센서스시 각지역별로 조사된 인구를 기초로 하는 제표는 본 인구가 상
주인구 보다는 상당히 큰 경우일 때에는 유용성이 있다. 따라서 본
인구는 상주인구만이 필요로 하게 되는 수준 이상의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122. 다음에 기술되는 제표는 결코 완전한 제표의 모형을 제시하
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의 목적은 완성품 (end products) 으로서
필요한 주요인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지적된 범주의 제표될 상관분류가 가능한 한 각국의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가지 요인이 단일표의 부분품으로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B. 제 표에 관한 「리스트」

123. 「리스트」는 계획범위의 개요적평가를 용이하도록 하기위해서 각제표에 관한 제목을 부여한다.

기본제표 (Basic Tabulation)

제 목

제표번호

1. 주요구역 및 소구역별 성별인구
2. 지역의 크기 및 성별지역인구
3. 주요지역 및 이들도시단별 성별인구
4. 가구의 크기별인구, 핵가족수 및 가구내에 살고있지않은 인구수
5.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관계 및 성별 가구의 인구
6. 각세별 및 성별인구
7. 5세연령 계급별 및 성별인구
8. 배우관계 연령 및 성별인구
9. 연령별 성별 국내 및 해외 출생인구
10. 출생국연령 및 성별 해외출생인구
11. 주요구역의 출생, 연령 및 성별국내 출생인구
12. 경제활동의 형태, 연령 및 성별 세 이상인구
13. 기능별범주 (functional Categories), 연령 및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14. 산업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15. 직업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16. 종사상의 지위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17. 종사상의 지위산업 및 성별경제활동인구
18. 종사상의 지위직업 및 "
19. 산업, 직업 및 성별 "
20. 직업, 배우관계, 연령 및 성별 "
21. 경제활동형태, 배우관계 및 연령별
세 이상의 여자인구
22. 문맹여부 연령 및 성별, 10세 이상의 인구
23. 교육정도 연령 및 성별 25세 이상의인구
24. 취학교육정도·연령 및 성별 24세 이상의 인구
25. 취학각세 연령 및 성별 24세 이상의인구
26. 직업교육정도·연령 및 성별·경제 활동인구
27. 연령 및 출생아수별 15세 이상의 여자인구
28. 연령 및 생존아수별 15세 이상의 여자인구
29. 종교, 연령 및 성별인구
30. 언어 (모어, 상용어 1개 이상의 언어능력 여부)연령 및 성별
인구
31. 지역 및 주요지역, 연령 및 성별거주기간별인구

(추가 제표)

32. 연령·출생아수 및 교육정도별 15세 이상의 여자인구

0. 각제표에 관한 내용 (규정)

124. 위에 기록된 각제표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논의된다. 제표에 포함된 인구·지역별분류 및 속성분류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설명하고있으며 각속성분류에 따르는 절에관한 참조번호는 각주제(항목) 별로 제 1 편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절의 내용과 같다.

〃 제표의용도 (Use of tabulation) 〃 란 제목하에서는 제시된 제표자료의 관한 용도 (적용) 에 대해서 설명하고있다.

(1) 총인구 및 성별 제구역 (대중소) 별 인구 (TOTAL POPULATION AND POPULATION OF MAJOR AND MINOR CIVIL DIVISIONS, BY SEX)

포함되는 인구 : 총인구

분류 :

(a) 지리적구분 (Geographic division) (i) 전국 (ii) 각대 구역별 (iii) 각소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ii) 및 (iii) 의 기준에서 구별한다 (101 - 102 절참조)

(b) 성별 (35 절참조) : 남자 및 여자

제표의용도 (적용)

센사스에 의한 총인구 및 그의 분포 (대중소지역별간) 에 관한 정보는 법적인 필요성을 내포하게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의 결과에 따라서 입법기관의 대표자할당을 결정하게 되며 또한 기타행정적인 많은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자료는 경제 및 사회적 시설에 관계되는 국내인구분포에

관한 연구, 국내인구이동에 관한 분석연구 및 기타인구분포의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등의 연구에 꼭 필요한 자료가 되는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발전계획에 관계되는 정책구상과 제지역간에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또한 본자료는 인구의 지역별 및 도시·농촌별인구분포의 장래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추계의 결과는 인구분포에 관한 제반정책의 필요성여부를 제시 해줄수 있게된다.

이러한것들 외에도 이 통계자료는 지역별수준 (Sub national)에 관한 동태통계율을 알수있게하며 이들동태율의 도시 및 농촌별 차를 연구하는데 필요하게된다. 인구의상호 유동성 (mobility)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건시설치의 지역결정에 관한 정책면에 유용하게 된다.

또한 동태통계율은 구역별 (Civil divisions) 장래인구추계에 이용되고 있다.

(2) 성별 지역별의 크기별 지역인구 (POPULATION IN LOCALITIES BY SIZE - CLASS OF LOCALITY AND SEX)

포함된인구: 총인구

(a) 지리적분류 (division) : (i)전국, (ii)각대구역별

(b) 지역인구의 크기별 (98 - 100 절)

500,000 명 또는 그 이상의 인구

100,000 - 499,999 명

50,000 - 99,999 명

20,000 - 49,999 명

10,000 - 19,999 명

5,000 - 999 명

2,000 - 4,999 명

1,000 - 1,999 명

500 - 999 명

200 - 499 명

200 이하의 인구

무인구지역 (Population not in localities) 및 별개의 크기별 지역의 수

(c) 성별 (35 절 참조) ; 남자, 여자

제표의 용도

본제표는 만일 분류에 관한 단위 (Unit) 가 98 절에 정의된 바와같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이라고 할수있는 정도의 국제비교를 가능케 할 인구의 집중 및 분산에 관한 전국적 모형 (Pattern) 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계속적인 세서스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지역별크기의 변동률 및 지역크기별 인구비율을 산출할수 있게 된다.

과거의 이에관한 추세를 기초로 하여 인구집중의 장래모형의 추세를 할수있으며 그럼으로써 인구분포에 관계되는 정책결정의 요인이 될수있는것이다.

도시 및 농촌인구를 지역별의 크기별로 구분할수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료는 도시 및 농촌분류의 기초로서 또는 도시화 비율의 산출기초가 되는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각인구의 크기별 지역분류는 1,000 , 10,000 및 20,000 명 등의 인구크기의 범주를 제공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범주별크기를 도시 및 농촌지역을 구분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3) 성별주요지역 및 이들 도시 집단의 인구
(POPULATION OF PRINCIPAL LOCALITIES AND OF THEIR URBAN
AGGLOMERATIONS, BY SEX)

포함될인구: 특정 한크기 이상의지역 인구 및 각지역의 도시집단에
관한 인구분류

- (a) 지리적분류: 전국
- (b) 주요지역 및 이들의 도시집단 (98 - 100 절참조) 각각의 특정
시 또는 읍, 각특정시 또는 읍의 도시집단
- (c) 특별 (35 절참조) 남자·여자

제표의 용도

주요도시 또는 읍의 인구크기 및 이들 주요도시 및 읍의일부
가 되는 도시집단의 인구크기에 관한 정보는 일국내의 최대규
모의 인구집락 (Clusters) 에 대한 성장관계를 연구하는데 필요
한 것이다. 이러한연구결과는 지역별용역 (Services) 즉 여러가지
시설, 도로·학교·병원등의 시설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된
다. 이러한 제반시설들은 인구크기별 비례에 따라서 필요하게된다.
고유한 (Proper) 도시의 수치이외도 도시집단의 수치에 관한사용
은 인구집중의 크기에대한 더적당한 지침을 제시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인구집중의 크기는 흔히 도시의 법적인·경계선 넘
어로 확대하게된다. 실로 이러한통계치는 시의경계선에 대한 재화
시 (redrawing) 의 필요성을 나타나게한다.

그러나 자료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시 고유의 수치 및 도
시 집단의 수치 이들양자가 필요할때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는

주위의 밀집된 정착 지역 밖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결정 및 이에 따르는 종속적행동의 책임은 다수의 소규모 행정적구역에 의해서 분담되어야 하며 이러한 각행정 구역 (단위) 은 이들 경계내부에 있는인구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된다.

- (4) 가구의크기별인구 (가구) 와 핵가족인구 및 비생존가구의 인구수 (POPULATION IN HOUSEHOLDS AND NUMBER OF FAMILY NUCLEI, BY SIZE OF HOUSEHOLD, AND NUMBER OF PERSONS NOT LIVING IN HOUSEHOLDS)

포함된인구 : 총인구

분 류 :

- (a) 지리적분류 (i) 전국, (ii) 각주요 (대) 지역별, (iii) 각 소구역별, (iv) 각주요지역별 (Principal)

도시 및 농촌 - (i), (ii) 및 (iii) 의 기준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101 - 102 절참조)

- (b) 가구의 크기별 (105 절참조) 1.2.3.4.5.6.7.8.9.10 인 이상, 미상, 각구기별가구의 총수

- (c) 핵가족의수 (109 절참조) :

0 (가족이없는가구) 1.2.3.4 인이상, 미상, 핵가족의총수 (별개의)

- (d) 비생존가구의 인구 (가구에서 살고있지 않는사람) (106 절참조) : 총수

제표의 용도

가구라함은 모든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제사회의 단위를 말

한다。

또한 경제사회발전의 연구에 관한 중심적인 대상이 된다。가구의 수 및 크기라든지 가구구성률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재화 및 용역공급자에 대한 계획을 하는자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재화 및 용역의 수요는 개인보다는 오히려 가구에 더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주택문제를 다루고있는 기관에서는 가구구성 (household formation) 의 현재 및 추정 (계획) 비율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필요로 하게되며 새로운주택 (단위) 의 크기 및 수는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하여 추계하는것이다。또한 가구는 여러가지의 기본단위인 것이며 이에대한 제표는 표본추출의 구형 (forme) 을 제공하며 조사결과의 정도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비교자료로서 사용된다。

가구내의 핵가족 수의 의한 가구구조 (household structure) 에 관한 정보는 가구 구성의 연구, 가구수의 추계 및 주택 추계등등에 필요한 것이다。

일련의 (Series) 센서스로부터 얻은 정보는 가구의 생활형태 (Pattern of living) 가 변화되고있는 제국가에서는 결합가족의 가구 (Joint-family household), 또는 다세대가족의 가구 (multi-generationfamily household) 의 분리 (disintegration) 에 관한 연구에 대단히 유용한 자료가 된다。

(5) 가구주와의관계 배우관계 및 성별 가구의인구

(POPULATION IN HOUSEHOLDS BY RELATIONSHIP TO HEAD OF HOUSEHOLD)

포함될인구 : 가구의전구성원

분 류

(a) 지리적분류 (i) 전국 (ii) 각주요 (대) 구역별 (iii) 각 소구역별, (iv) 각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ii) 및 (iii)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여야 한다. (101 - 102 절참조)

(b) 가구주와의관계 (39 - 40 절참조) 가구주·배우자·아들·아들의배우자·손자 또는 손손자·양친 또는 배우자의 양친 기타 친척·하안·가구주와 관계없는 기타의사람, 미상

(c) 배우관계별 (40 - 50 절참조)

독신 (미혼) · 결혼자 · 미망인 · 이혼 · 별거자 · 미상

(d) 성별 (35 절참조) : 남자 여자

제표의 용도

본제표는 가구내의 개개인의 분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며 이것은 가구원간에 아주 특별한 관계 (typical relationship) 를 알수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원간의 특별관계를 갖는 가구내에서 살고있는 사람의 비율을 알수있게 된다.

이들 자료를 이전 (조기) 센서스의 유사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가구구성 (household composition) 의 변동모형 및 가구주특성 (Characteristics) 의 변동모형에 관한 정보를 알수있으며 이들 자료는 가구수에 대한 추세를 하는데 적용되는 것이다.

(6) 각세연령 및 성별 인구

(Population by single years of age and sex)

포함인구 : 총인구

분 류 :

(a) 지리적구분 : 전국, 도시 및 농촌을 구분할것 (101 - 102 절 참조)

(b) 연령별 (36 ~ 38 절참조) : 1세미만, 1-2, 3, 4, 5, 99, 100 세 이상, 미상

(c) 성별 (35 절참조) : 남자 여자

제표의 용도

총인구 : 도시 및 농촌인구에 대한 연령 및 성별 구조에 대한 정보는 생산 확률 및 이에 관련된 생명표 함수에 관한 분석에 필요하다.

또한 본자료는 총인구, 도시 및 농촌인구에 대한 센서스의 연령별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이며 본제표에 의해서 어떤 특정연령의 계급화 (grouping) (즉 취학연령인구, 투표연령호의 인구 또는 식량산출량의 산출에 적용되는 집단) 를 재구성할 수 있다. (5세연령 계급을 각세화하는데 보간법을 적용하지 않고서도)

(7) 5세연령계급별 성별 인구

(Population by five-year age groups and sex)

포함인구 : 총인구

분 류 :

- (a) 지리적 구분 : (i) 전국 (ii) 각주요 구역별 (iii) 각소구역별
(iv) 각주요지역별도시 및 농촌 (i) (ii) 및 (iii) 의 기준위
에서 구분할것 (101 - 102절)
- (b) 연령별 (36 ~ 38 절참조) : 1세 미만, 1-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세이상, 미상
- (c) 성별 (35 절참조) : 남자 및 여자

계표의 용도

본계표의 정보는 인구변화요인에 관한 분석, 인구추계, 특정 연령 계급의 동태율 노동공급요소의 분석 및 「dependency」 (부양가족) 문제에 관한 연구와 같은것을 포함하는 많은 목적에 적용된다. 계급별 연령분류는 이것이 기타 변량과의 상관분류를 하는데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또한 본계표는 총인구 도시 및 농촌인구를 연령계급 (기타 대부분의 권고계표에서 사용되는) 에 따르는 지리적 지역별로 그 개요를 간단하게 제시해 준다.

본계표는 「Graduated data」 (수정된자료) 보다는 조자료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 (6) 배우관계, 연령 및 성별인구
(Population by marital status age and sex)

포함인구 : 총인구

분 류 :

- (a) 지리적 구분, (i) 전국 (ii) 각주요 구역별 (iii) 각주요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 의 기준에서 구분할것 (101-
102 절 참조)
- (b) 배우관계별 (44 - 50 참조) : 미혼, 결혼, 과부, 이혼, 별거, 미상

- (b) 배우관계별 (44-50절 참조) : 미혼, 결혼, 과부, 이혼, 별거, 미상
- (c) 연령별 (36 - 38 절 참조) : 15세 미만,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세 이상, 미상
- (d) 성별 (35절 참조) :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본제표는 혼인통계가 없는 경우에 결혼연령의 연구자료를 제공하며 미혼, 과부 및 이혼의 빈도, 생산력의 결과에 의한 인구 성장과 이들 요인과의 영향등을 알 수 있다.

이들 출산력에 대한 간단한 측정은 가임연령여자인구에 대한 출생아수의 비율, 결혼부인에 대한 출생아수의 비율등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인구보다는 현주 (de facto) 인구, 배우관계에 관한 정보가 더 유용한 것이다.

연령 및 성별전체인구에 대한 법정배우관계에 관한 정보는 조 및 특수연령별 동태율을 계산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적자 및 비적자, 이전의 배우관계에 대한 특수결혼률, 결혼인구를 기준으로 한 결혼률 및 배우관계에 대한 특수사망률등을 포함해서) 또한 본자료는 결혼표를 작성하는데도 필요하다.

(9) 연령 및 성별 국내 및 국외출생인구

(Native and foreign-born population by age and sex)

포함인구; 총인구

분류;

(a)지리적구분; (i) 전국, (ii)각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의 기준위에서 구분할것 (101 ~ 102 절 참조)

(b)출생지별 (25 ~ 31 절 참조); 국내출생, 국외출생, 미상

(c)연령별 (36 ~ 38 절 참조); 1세미만, 1 ~ 4, 5 ~ 9, 10 ~ 14, 15 ~ 19, 20 ~ 24,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 64, 65 ~ 69, 70 ~ 74, 75 세이상, 미상

(d)성별 (35 절 참조);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이민이 상당한 범위로 일어났던 국가에 있어서는 국내 및 국외출생인구에 대한 연령 및 성별정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표하는 것이 더 적용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인구의 성장 및 구조에 대한 이민의 결과 (effects) 는 검증될 수 있는 것이며 장래의 사망력 및 출산력에 대한 추계는 국내출생인의 차별을 고려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1세이하에 유아에 대한 범주는 국외 및 국내출생유아의 상대적 조사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10) 출생국, 연령 및 성별 국외출생인구

포함인구: 국외출생인구

분류:

- (a) 지리적 구분: (i)전국 (ii)각주요구역별
- (b) 미출생국별 (25 ~ 31 절 참조); 각대륙, 각국가, 기타국가, 미상
- (c) 연령별 (36 ~ 38 절 참조); 1세미만, 1~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세이상, 미상
- (d) 성별 (35 절 참조);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출생국에 관한 자료는 비록 이들 자료자체가 동화 (assimilation) 정도에 관한 어떤 제시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민자 (immigration) 간에 종족집단 (ethnic groups) 을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또한 이들 자료는 특정제국가로부터 순이동량을 추정하는 기초를 제공하게 되며 이민자의 출생국, 연령 및 성별에 관계되는 문화적 동화에 대한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11) 주요구역별출생, 연령 및 성별 국내출생인구

(Native population by major civil division of birth, age and sex)

포함인구: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

분류 ;

- (a) 지리적 구분 ; (i) 전국 (ii) 각주요구역별 (iii) 각주요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 의 기준에 의해 구분할 것 (101 ~ 102 절 참조)
- (b) 주요구역의 출생별 (25 ~ 30 절 참조) ; 국가의 주요구역, 미상
- (c) 연령별 (36 ~ 38 절 참조) ; 0 ~ 4 , 5 ~ 9 , 10 ~ 14 , 15 ~ 19 , 20 ~ 24 , 25 ~ 29 , 30 ~ 34 , 35 ~ 39 , 40 ~ 44 , 45 ~ 49 , 50 ~ 54 , 55 ~ 59 , 60 ~ 64 , 65 ~ 69 , 70 ~ 74 , 75 세 이상 , 미상
- (d) 성별 (35 절 참조) ;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본 제표는 국가의 각 주요지역별의 전입 및 전출인구이동의 크기 (이민의 원출생지와 동시에) 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국내 인구이동을 연구하는데 유용자료가 된다.

그러나 본 자료는 주요지역별로는 확인될 수 있지만 거주기간 또는 이전거주지 (Prior place of residence)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내이동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본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국내인구 이동의 주된 현상인 대도시로의 이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치 못하며 또한 많은 해외출생자가 그들 최초의 국내거주 이후에 국내 이민자가 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중요사실에 관한 결핍 (drawback) 에도 불구하고 국내이민에 대한 기타 정보가 없는 제국가에 있어서는 유용한 목적에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는 본 자료의 편찬을 권고하게 된다.

(12) 경제활동의 형태, 연령 및 성별세이상의 인구

(Population years of age and over by type of activity, age and sex)

포함인구;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채택되는 최저연령 및 그 이상의 인구

분류;

(a) 지리적 구분; (i) 전국 (ii) 각 주요구역별 (iii) 각 주요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의 기준위에서 구분할것 (101 ~ 102 절 참조)

(b) 경제활동의 형태 (77 ~ 86 절 참조); 경제활동인구 [(i) 취업자 (ii) 실업자 (처음으로 구직코자 하는 자와 구분함)], 비경제활동인구, 미상

(c) 연령별 (36 ~ 38 절 참조); 15세미만, 15 ~ 19, 20 ~ 24,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 64, 65 ~ 69, 70 ~ 74, 75 세이상, 미상

15세미만의 범주는 각 국가가 센서스조사표상에서 경제활동에

대해서 채택하는 최근 연령한계 및 14세간에 있는 모든 연령을 이에 포함하게 된다. (만일 최저 연령한계가 1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d) 성별 (35절 참조) :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노동력의 성장, 구성 및 분포에 관한 연구는 일국 인력자원의 완전 및 효율적인 가동 (Utilization) 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계획 및 정책 결정에 대한 기본적 중대사항인 것이다. 본 제표는 조 및 연령·계급별참가 (노동)율 즉 각 연령집단의 여자 및 남자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자료는 일국의 노동력의 크기 및 구성을 결정하는 제요인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데 기초가 될뿐 아니라 인구의 구조 및 크기에 대한 관계를 알고 노동력 추계를 하는데 중요한 기초로서 이용된다.

경제활동율은 경제활동의 가입 (참가) 및 경제활동에서의 은퇴율 및 남녀노동생명 (기간) 을 산출하는 생명표 함수와 더불어 이용된다.

취업 및 실업자에 대한 정보는 노동력이용 (가동) 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자료 (노동력 이용에 대한 평가) 는 단기 및 장기정책계획을 하는 지침으로서 적용된다. 또한 본 자료는 노동력 표본조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완전실업 및 불완전 실업에 관한 치밀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가 되는 것이다.

(13) 기능별 범주 ; 연령 및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Population not economically active by functional categories, age and sex)

포함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분류 ;

(a) 지리적구분 ; (i) 전국 (ii) 각 주요구역별

(b) 기능별범주 (85 ~ 86 절 참조) ; 「 Home maker 」 , 학생 , 소득 수입자 , 기타 , 미상

(c) 연령별 (36 ~ 38 절 참조) ; 15 세 미만 , 15 ~ 19 , 20 ~ 24 , 25 ~ 29 , 30 ~ 34 , 35 ~ 39 , 40 ~ 44 , 45 ~ 49 , 50 ~ 54 , 55 ~ 59 , 60 ~ 64 , 65 ~ 69 70 ~ 74 , 75 세 이상 , 미상

15 세 미만의 범주는 각 국가가 센서스 조사표상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채택되는 최저 연령한계 및 14 세간의 모든 인구를 포함하게 된다. (만일 최저 연령한계가 15 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d) 성별 (35 절 참조) ;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본 제표는 현재에 있어서는 좋이하계 이용될 수 없지만 어떤 다른 경우에 이용가능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잠재적 원천을 분석하는 자료를 제시하게 된다.

(14) 산업,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industry, age and sex)

포함인구 : 경제활동인구

분류 :

(a) 지리적 구분 ; (i) 전국 (ii) 도시 및 농촌을 구분할것
(101 ~ 102 절 참조)

(b) 산업별 (89 ~ 90 절 참조) ; U N ,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의 최근판에 의하거나 이에 준하는 분류를
할것 (최소한도 대분류로 할것)

(c) 연령별 (36 ~ 38 절 참조) ; 15세미만 , 15 ~ 19 ,
20 ~ 24 , 25 ~ 29 , 30 ~ 34 , 35 ~ 39 , 40 ~ 44 ,
45 ~ 49 , 50 ~ 54 , 55 ~ 59 , 60 ~ 64 , 65 ~ 69 ,
70 ~ 74 , 75 세 이상 , 미상

15세미만의 범주는 각 국가가 센서스 조사표상에서 경
계활동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채택된 최저 연령한계
및 14세간의 모든 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최
저 연령이 15세미만이라고 한다면)

(d) 성별 ;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본 제표는 특정직업 및 산업에 있어서의 인구에 대한
연령 성별 분포를 제시하는것 이외에도 제표 14 및 15는
특정형태의 경제활동의 가입 (참가) 및 은퇴율을 분석하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들 자료는 여러가지의 직업 및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의 예상추세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며 (총 경제활동인구의 추계구조내에서), 또한 본 제표는 직업 및 산업에 따르는 출산 및 사망차별분석에 대한 분모가 되는 것이다.

(15) 직업, 연령 및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occupation, age and sex)

포함인구: 경제활동인구

분류:

- (a) 지리적구분: 전국, 도시 및 농촌을 구분할 것 (101 ~ 102 절 참조)
- (b) 직업별 (87 ~ 88 절 참조): 국제노동국 (ILO)의 국제표준 직업분류의 최근판에 의하거나 이에 준하는 분류를 할 것 (최소한도 소분류로 할 것)
- (c) 연령별 (36 ~ 38 절 참조): 15세미만,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세 이상, 미상 15세미만의 범주는 각 국가가 센서스 조사표상에서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 채택되는 최저 연령한계 및 14세간의 모든 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최저 연령한계가 15세이하라고 한다면)
- (d) 성별 (35 절 참조):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이들 제표는 복잡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표 사용에 대한 논의는 제표 14에서 함께 언급되었다.

(16) 종사상의 지위,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status, age and sex)

포함인구: 경제활동인구

분류:

(a) 지리적 구분: 전국, 도시 및 농촌을 별도로 구분할 것

(101~102 절 참조)

(b) 종사상의 지위별 (91~92 절 참조): 고용주, 자영업주, 피고용자, 무보수가속종사자, 생산자조합원, 종사상의 지위별 분류불가능

(c) 연령별 (36~38 절 참조): 15세미만,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세이상, 미상

15세미만의 범수는 각 국가가 센서스 조사표상 경제활동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에 채택한 최저 연령한계 및 14세간에 있는 모든 인구를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최저 연령한계가 15세미만이라 한다면)

(d) 성별: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본 제표는 사회, 경제적 종사상의 지위 (Status) 에 관한 지표로서 사용된다. 또한 본 자료는 주로 피고용자집단에 한해서 문제가 되는 사회복지계획, 보건상의 보장계획등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게 된다.

성 및 무보수가족종사자에 대한 분류는 각 국가별로 이러한 노동자(집단의) 정의 및 조사에 따르는 제반실제사항이 각각 다르다는 견지에서 여자에 대한 경제활동율의 국제상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된다.

(17) 종사상의 지위 (status), 산업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status, industry and sex)

포함인구: 경제활동인구

분류:

- (a) 지리적 분류(구분): (i) 총인구 (ii) 각 대(주요) 구역별 (iii) 각 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것 (101~102 절 참조)
- (b) 종사상의 지위별 (91~98 절 참조): 고용주, 자영업주 (Own account worker), 피고용자, 무보수가족종사자, 생산자조합회원 (Member of producers' co-operative) 분류불능별 종사자의 지위
- (c) 산업별 (89~90 절 참조): UN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의 최근 개정판에 의한 분류라야 하며 또는 본 분류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최소한도 대분류 (2 단) 로 분류하여야 한다.
- (d) 성별: 남자·여자

제표의 용도

제표 (17), (18) 및 19는 국가의 인력(노동력) 동원의 잠재성 및 그의 이용에 관한 통계들 제공하며 또한 이들 자료는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발전계획을 설정하는데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특히 무보수가족종사자의 정의 및 조사원 (또는 응답자)에 의한 이들 정의의 해석상 유의적인 도량 (Significant variations)의 가능성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특정산업에 있어서 노동력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에 관한 정보는 즉 가내공업의 형태인 무보수가족종사자에 비하여 임금 및 봉급노동자에 대한 고용의 크기는 이들 분야의 발전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이 된다.

각각 상이한 산업별 임금 및 봉급노동자의 수에 관한 자료는 사업체보고서에서 수집된 경상통계 (Current Statistics)에 대한 기준점 (Bench-mark)의 자료로서 필요한 것이다.

(18) 종사상의 지위, 직업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status, occupation and sex)

포함인구: 경제활동인구

분류:

(a) 지리적 구분: (i) 종인구 (ii) 각 주요구역별 (iii) 각 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의 기준위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101 ~ 102 절 참조)

(b) 종업상의 지위별 (91 ~ 92 절 참조): 고용주·자영업주·고용자·무보수가족종사자·생산자조합원 및 분류불능

(c) 직업별 (87 ~ 88 절 참조): 국제노동국 (ILO)의 국제표준 직업분류의 최근개정판에 의한 것이라야 하며 최소한 소분류까지 분류하거나 또는 여기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야

동시에 이와같은 자료는 국민생산 및 국민소득분석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경제의 각 산업별 분야 (sector) 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및 어떤 특정산업분야에서 타 산업분야로의 전환 (shift) 비율에 관한 연구는 산업수준 및 추세와 국가경제발전의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이동에 대한 연구는 도시에 있어서의 직업 및 산업별 노동력구조의 분석 및 또는 주요지역의 진출, 이민에 관한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동시에 이와같은 자료는 국내이동에 관한 경제적 양상을 알아보는데 유용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에 관한 연구는 국내이동에 대한 정책의 구상 및 「resettlement」의 계획에 적절한 것이 되며 또는 산업체 (사업체) 설립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내 제지역의 산업 및 직업별 노동력구조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교육제도의 개선 및 노동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계획하기 위하여서는 산업 및 직업별 노동력의 필요성을 추정하는데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총사상의 지위별 (고용주, 피고용자등) 산업 및 직업에 관한 횡제표 (Cross-tabulation) 는 특정계급의 집단 즉 영업주 및 무보수가족종사자가 고용되고 있는 산업 및 직업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게 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산업별 노동력 분포에 있어서 무보수가족종사자의 포함여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다.

(d) 성별 (35 절 참조) ; 남자 및 여자

본 제표의 용도

이에 관한 제표는 여러가지 면에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이 제표의 사용에 대한 것은 제표 17의 용도에서 설명하였다.

(19) 산업·직업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industry, occupation and sex)

포함인구 ; 경제활동인구.

분류 ;

(a) 지리적 구분 ; (i) 종인구 (ii) 각 주요구역별 (iii) 각 수요지역별

(b) 산업별 (89 ~ 90 절 참조) ;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의 최근 개정판에 의한 것이라야 하며 최소한도 대분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c) 직업별 (87 ~ 88 절 참조) ; 국제노동국의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에 의한 것이어야만 하며 적어도 소분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일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의한 세분류 (Cross-tabulation) 및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에 의한 소분류가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ISIC의 분류는 ISIC의 대분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세한 직업별 자료가 상세한 산업별 자료보다도 효용성이 더 큰 것이기때문에 ISCO의 소분류는 꼭 필요하게 된다.

(d) 성별 (35 절 참조) ;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이들 제표는 복잡한 관계때문에 본 제표용도상의 논의는 제표 17의 내용에서 설명되었다.

직업, 배우관계,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Occupation, Marital Status, Age and Sex)

포함인구: 경제활동인구

분 류:

- (a) 지리적구분: (i) 전국, (ii) 각 주요구역별 (iii)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 의 기초위에서 구분할것 (101 - 102 절 참조)
- (b) 직업별 (87-88 절 참조): 국제노동국 (I.L.O.) 의 국제표준 직업분류의 최근 개정판에 의한 분류라야 하며 최소한 대분류로 되어야 한다.
- (c) 배우관계별 (44 - 50 절 참조): 미혼, 혼인, 기타, 미상
- (d) 연령별 (36 - 38 절 참조): 15세미만, 15-24세, 25 - 44세, 45 - 64세, 65세이상, 미상
15세 미만에 있어서는 만일 최소가 15세 이하라고 한다면 센서스시 경제활동에 대한 질문에서 그 해당국가가 채택한 최저연령의 한계와 14세간의 모든 연령을 포함하게 된다.
- (e) 성별 (35 절 참조):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본 제표의 여자인구에 관한 자료는 배우관계 및 연령별 총여자 인구의 제표에서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배우관계 및 여자 경제활동 인구의 직업과의 관계 또는 배우관계에 의한 여자인구의 분포에 있어서 예상되는 변동에 따른 가능한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자료는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의 총수를 알 수 있게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기혼남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미혼경제활동남자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이다.

직업별 분류를 포함해서 권고된 기타 제표와는 달리 본 제표에서는 73종의 소분류 (Minor groups) 보다는 국제표준 직업분류 (I.S.C.O) 에 의한 10종의 대분류 (또는 이를 전환할 수 있는) 의 직업별 범주 (Occupation categories) 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물론 보다 세분범주의 자료가 유용하고 관심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연령 및 성별 특수배우관계의 범주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다 정확성 있는 사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무리하게 광범위한 제표를 필요로 하게 된다.

(2) 경제활동형태, 배우관계, 연령 및 성별인구 (Female population
..... years of Age and over by Type of Activity, Marital
Status and Sex (Basic))

포함인구: 경제활동인구

분류:

(a) 지리적구분: (i) 전국 (ii) 각 주요구역별, (iii) 각 주요 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의 기준위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101-102 절 참조)

(b) 경제활동의 형태 (77-86 절 참조)

경제활동인구 [(i) 고용자 (취업자), (ii) 실업자 (처음으로 직업을 구하는 자와 구분할것), 비경제활동인구, 미상

(c) 배우관계별 (44-50 절) , 미혼 , 혼인 , 미망인 , 이혼 , 별거 , 미상

(d) 연령 (36-38 절) : 15 세 미만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및 75 세 이상 , 미상

15 세 미만에 , 있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센서스 조사항목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최소연령한계 (limit) 및 14 세간의 전연령층을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최저한계가 15 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제표의 용도

본 제표자료는 여자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배우관계의 분석자료 및 여자인구의 배우관계별 분포에서 예기되는 변동결과에 관한 분석자료를 제공해 준다.

만일 이들 결과가 도시 및 농촌지역별로 각각 권고안과 같이 제표된다면 농업 또는 비농업에 종사하는 여자인구의 배우관계에 대한 근사치등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시에 미개발된 여자노동력 공급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는 배우관계의 집단을 제시하게 된다.

(2) 10 세 이상의 문맹여부 , 성 및 연령별인구 (Population 10 years of Age and over by literacy, age and Sex)

포함인구 : 10 세 이상의 인구

분 류 :

- (a) 지리적구분: (1) 전국, (2) 각 중요지구별 도시 및 농촌은
 (i) 및 (ii)의 기준위에서 구분할것 (101-102 절 참조)
- (b) 문맹여부별 (58-61 절): 문맹자, 비문맹자, 미상
- (c) 연령 (36-38 절 참조): 10-14 세,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54 세,
 55-64 세, 65 세이상, 미상
- (d) 성별: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본 제표의 정보는 국민생활수준의 지표의 하나로서 기술 및 문화발전에 대한 국가능력 (Capacity) 의 제요소중 하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본 자료는 지난 세대의 교육발전에 대한 진행과정을 알아보고 또한 장래의 추세를 추정하는데 필요하다.

대부분의 인구가 비문맹자인 국가에 있어서 본 자료의 제표가 특별히 지역별로 제표되었을 경우에는 성인들의 문맹자를 위한 제반계획을 하는데 직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용 이외에도 이 자료는 문맹여부별 차별동태통계를 산출하는데 분모 (denominator) 가 되는 것이며 사회경제적 도수 (모의 문맹여부별 출생 및 부처의 문맹여부별 결혼 및 이혼율) 로서 이용된다.

센서스에 있어서 문맹통계는 UNESCO 가 착수한 세계문맹 퇴치운동의 영향을 측정하는데 (10년동안의)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대중문맹 퇴치계획은 1966년초의 UNESCO 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3) 교육정도, 연령 및 성별 25세 이상의 인구 (Population 25 years of Age and Over by Educational Attainment, Age and Sex)

포함인구: 25세 이상 인구

분 류 :

(a) 지리적구분: (i) 전국, (ii) 각 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의 기준위에서 구분할것 (101-102 절 참조)

(b) 교육정도별 (64-69 절)

(i) 무학 (국민학교 이전단계의 교육 및 국민학교 1년이하의 교육)

(ii) 국민학교수준의 교육

(iii) 중고등학교수준의 교육 (일반직업, 교사 양성소훈련) 졸업, 중퇴

(iv) 형태별 대학교육 (대학, 이에 준하는 건구소, 비대학의 사범교육, 기타의 비대학) 졸업, 중도

(v) 특별교육(분류 할 수없는 수준에 속하는것)

(vi) 미상

(c) 연령 (36-38 절) :

25-34 세, 35-44 세, 45-54 세, 55-64 세, 65세이상
미상 (24 세 이상에 한)

(d) 성별 (35 절 참조) :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본 제표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가의 능력 (Capacity) 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제시하게 되고 경제활동의 제반형태에 대한 인력자원 (교육만은) 의 현재 및 장래의 예측의 필요량은 물론

성인인구 (adult population) 에 대한 현재 교육시설의 비교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비교는 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가행정 및 경제발전계획 (인적자원의 전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며 또한 "교육수준의 지수" 즉 25 세이상 인구의 교육년도의 등위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료는 국민생활수준에 대한 가치있는 보완적 지표가 된다.

- (24) 25 세이하 인구의 취학년수, 교육수준, 연령 및 성별인구
(Population To 24 Years of Age by School attendance, educational attainment Age Sex)

포함인구: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통상적 연령의 인구로부터 24세
간에 있어서의 전인구

분 류:

- (a) 지리적구분: (i) 전국, (ii) 각 주요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의 기준하에서 구분할것 (101-102 절 참조)

- (b) 취업년수별 (62-63 절 참조) 취학, 미취학, 미상

- (c) 교육정도 (수준)별 (64-69 절 참조)

(i) 미취학 및 국민학교 1년이하의 교육정도

(ii) 국민학교 및 중퇴별 교육정도

(iii) 형태별 중고등학교의 교육정도 (일반, 직업교사훈련)

(iv) 형태별 대학교육정도 (대학 이에 준하는 연구원 비대학의

사범교육 기타의 비대학)

(v) 특별 교육 (교육정도 (수준) 별로 분류할 수 없음)

(vi) 미상 (교육정도의 미상)

(d) 연령별 (36-38 절 참조)

9 세 , 10-14 세 , 15-19 세 , 20-24 세

미만 (25 세 미만 에 있어서만) 하한연령 한계는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통상적 연령이어야 한다. 만일 노연령층의 유의적 (Significant) 인 부분이 취학상태에 있다면 상한연령 한계는 적절하게 확대시켜야 하며 필요한 범주의 추가가 연령분류에 부가되어야 한다.

(e) 성별 (35 절 참조) :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학령인구 (School-age population) 의 교육수준 (정도) 에 관한 자료는 이들이 취학년도별로 상관분류되지 않는한 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와같이 상관분류가 됨으로써 본 자료는 계속되는 학년 (school grade) 에 있어서 학생들의 조기취학 (promotion) 및 만기취학 (retardation) 의 정도에 관한 교육정도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며 반면에 미취학 학령아동에 대한 이들 동일 자료는 그 아동들이 일정한 교육수준을 마치기 전에 중퇴하는 빈도에 관한 지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두가지의 특성별 상관분류는 특정교육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정규교육과정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 (likelihood) 여부의

지표가 된다.

만일 연령이 각 세별로 제표될 경우, 본 자료의 유용성은 더욱 크게 된다. 그러나 각 세의 범주가 상당히 큰 부분의 제표를 차지하게 되고 또한 각 세, 연령별 취학년수에 대한 제표가 분류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5세계급별 연령분류의 정도가 현재의 제표로서는 만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학년수 및 교육수준에 대한 자료와 결합시킴으로써 각 교육수준별 순학년수의 정보를 얻을수 있으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수개의 생활수준에 대한 지표를 근사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a) 총취학비율 (total school enrolment ratio) 이것은 5 - 19 세 연령인구에 대한 「퍼센테이지」 비율로서 3 단계 수준의 교육 (대학교육) 이하의 총취학을 말하는 것이다.
- (b) 국민 학교 취학비율 (primary school enrolment ratio) 이것은 5 - 14 세 연령인구에 대한 「퍼센테이지」 비율로서 1 차단계 수준의 총취학인구를 말한다.
- (c) 중고등학교 취학비율 (secondary school enrolment ratio) 이것은 15-19 세 연령인구에 대한 「퍼센테이지」 비율로서 2 차단계의 교육수준에 있는 총취학인구를 말한다.
- (d) 대학교육 취학비율 (higher education enrolment ratio) 이것은 인구 100,000 명에 대한 3 차단계 교육수준의 총취학인구수를 말한다.

25) 24 세이하의 취학년수 각세연령 및 성별인구

(Population to 24 years of age, by school attendance, single years of age and sex)

포함인구: 국민 학교 입학연령층 (통상) 으로부터 24 세 연령층간에 있는 총인구

분 류 :

- (a) 지리적구분: (1) 전국, (II) 각주요구별 도시 및 농촌을 (1) 및 (II)의 기준위에서 구분할것 (101-102 절참조)
- (b) 취학년수별 (62-63 절 참조) : 취학, 불취학, 미상
- (c) 연령별 (36-38 절 참조) : 5세, 6세,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미상 (25 세이하만) 하한연령의 한계는 일차단계의 학교 (국민 학교) 에 입학하는 통상적 연령이어야 되며 만일 연로연령층의 상당수 (Significant number) 가 취학상태에 있다면 상한연령 한계는 적절하게 확대되어야 하고 필요한 범주의 추가가 연령분류에 참가되어야 한다.
- (d) 성별: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연소연령층의 취학 및 불취학의 분류 (각세 및 성별) 는 학령 인구 및 실제의 취학인구수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교육제도에 있어서, 혜택을 입은 학령인구의 비율은 일국의 현교육제도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데는 가장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상의 기록 (즉 행정적부산물) 에서 수집되는 취학통계는 많은 나라에 있어서 총취학년수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는 취

학 인구의 모든 특성에 대한 가치 있는 분류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특히 연령 분류에서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교육 연구원 (Educational Institution) 의 기록등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총괄적이며 세밀한 통계를 편찬할 수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이들 통계를 센서스 정보와 비교할 경우 그들의 정도에 대한 기간적 평가를 하는데 유익하게 된다.

(26) 직업, 교육정도,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Occupation, Educational Attainment, Age and Sex)

포함 인구 : 경제활동인구

분 류 :

(a) 지리적구분 : (1) 전국, (ii) 각주요구역별

(b) 직업별 (87-88 절 참조) : 국제노동국의 국제표준분류 (ISCO) 의 최근판에 의하거나 이에 준하는 분류에 의해서 최소한도 소분류로 분류하여야 한다.

(c) 교육수준별 (64-69 절 참조) : 1 차단계 수준의 교육과정의 졸업 및 중퇴 중 고등학교의 졸업 및 중퇴 대학교과정교육의 졸업 및 중퇴 특별교육 (교육수준별로 미분류된) , 미상

(d) 연령별 (36-38 절 참조) : 15 세이하, 15-19 세, 20-24, 25-44, 45-46, 65 세이상 미상, 15 세이하의 범주는 센서스시의 경제활동조사항목에 있어서 국가가 선정하는 최소 연령 한계 및 14 세간의 모든 연령을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최저가 15 세미만이라고 한다면)

(e) 성별 (35 절 참조) :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본제표는 인력자원 (교육받은) 현필요량의 분석 및 현인력자원의 충족여부에 대한 그 크기 (정도) 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이 자료는 교육이 경제구조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도 (Extent) 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게 된다.

(27) 15세 이상의 연령 및 출생아수별 여자인구

(Female Population 15 years of Age and over by Age and number of Children Born Alive)

포함인구: 15세 이상의 인구 (여자), 만일 포함인구가 혼인한 여자로 제한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분 류:

- (a) 지리적구분: (i) 전국, (ii) 각주 요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의 기준위에서 구분할것 (101-102 절 참조)
- (b) 연령별 (36-38 절 참조):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 세이상 미상
- (c) 출생아수별 (51-55 절 참조): 0, 1, 2, 3, 4, 5, 6, 7, 8, 9, 10 명 이상, 미상, 각 여자범주에 있어서의 총출생아수

제표의 용도

사실출생에 관한 센사스자료는 신뢰성 높은 출생신고통계로서는 대체가 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출생신고 통계가 불명확한 국가에서는 특수연령별 출생율 및 총인구에 대한 조출생율을 추

정하는데 본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를 갖는다.

이외에도, 본자료는 여자의 인구의 출생경험에 관한 개요를 제시하게 되므로 신고자료의 보완으로서도 유용성이 크게 된다.

본제표에서 산출할 수 있는 출생에 관한 기본추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조출생율 (가임연령여자에 대한 평균 출생아수)
- (b) 가임기간이 끝난여자의 평균 출생아수 (즉 50세 이상)
- (c) 재생산기간 활동이 끝났으나 어린애가 없는 여자의 비율
- (d) 최소한도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자에 대한 평균출생아수
- (e) 연령계급별 누적 평균조출생율 (Cumulative average gross fertility ratio)

또한 본자료는 특수출생율 (Parity 에 대한) 산출의 기초를 제공하며 시계열적인 센서스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특정 연령 계급이 타연령 계급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그들의 재생산 (Reproduction) 의 모형을 연구하고 여자에 대한 연령 계급별 집단 (Cohort) 을 확인하게 한다.

(28) 15세 이상의 연령 및 생자아수별 여자인구
(Female Population 15 years of Age and over by Age and Number of Children Living)

포함인구: 15세 이상의 여자인구, 포함인구가 가혼부인으로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분 류:

(a) 지리적구분: (1) 전국, (11) 각주요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 (1) 및 (11)의 기준위에서 구분할것 (101-102 절 참조)

(b) 연령별 (36-38 절 참조): 15-19세, 20-24세, 25-29세,

30-34 세 , 35-39 세 , 40-44 세 , 45-49 , 50-54, 55-59, 60-64, 65-69, 70-74 세 , 75 세 이상 , 미상

(c) 출생아 수별 (51-55 절 참조) : 0, 1, 2, 3, 4, 5, 6, 7, 8, 9, 10 명 이상, 미상

제표의 용도

본제표의 자료는 사망신고통계가 잘되지 않은 제국가에서는 아주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자료에 의해서 부인의 재생산 기간동안에 출생한 아들에 대한 사망력 (Mortality) 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제표에서 산출할 수 있는 출산력에 대한 두가지 측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순출산율 (가임연령층이상에 있는 부인에 있어서 생산하고 있는 평균어린이 수) 및 (b) 연령계급별 순평균출생율, 세대별사망력추정은 본제표에서 산출된 순출산율과 제표 27에서 산출된 조출산율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 방법은 사망율을 적절한 동태 신고통계로 부터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 특별히 유용하게 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출생 및 사망력추정 이외에도 본제표는 현존자손 (Off-spring) 수별가족구성에 관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출생신고통계에 의하여서도 수집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한 센서스정보에서도 수집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센서스상의 가족은 동일가구내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서 조사된 사람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는 조사된 부인에 대한 전생존아수를 포함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존아수별 (Number of living issue) 가족에 대한

제표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된다.

(29) 종교 연령 및 성별인구
(Population by Religion, Age and Sex)

포함인구 ; 총인구

분 류 ;

(a) 지리적 구분 : (i) 전국, (ii) 각 주요구역별

(b) 종교 (74-76 절) : 각종교별 (만일 필요한 경우 종파별)

기타의 종교, 비종교, 미상

(c) 연령별 (36-38 절 참조) : 5 세이하, 5-14,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 세이상, 미상

(d) 성별 (35 절 참조) : 남자 및 여자

제표의 용도

본제표는 일국에 있어서 상이한 종교집단의 상대적 크기 및 연령성별분포에 관한 양적추정 (Assessment)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상이한 가족을 가진 사람들간에 경제 및 사회적 특정면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 제국에 있어서는 이들의 특성 및 종교적 신념 (또는 감화) 과의 관계에 대한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본자료는 아주 유용한 것이 된다.

(30) 언어 (모어, 상용어 또는 1개이상의 언어에 통하는 능력여부, 연령 및 성별인구)
(Population by Language, Age and Sex)

포함인구 ; 총인구

분 류 ;

- (a) 지리적구분 : (i) 전국, (ii) 각 주요구역별, (iii) 각주요지역별
- (b) 언어별 (70-73 절참조) : 별개의 정보가 필요한 각언어 또는 종합언어 (Combination of languages), 기타의 언어, 미상
- (c) 연령별 (36-38 절 참조) : 5세 이하, 5-14,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세 이상, 미상

제 표의 용도

모어에 대한 자료는 민족 및 종족상의 집단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서 유용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이들 집단은 흔히 국내의 대다수인구(민족)의 기타 관습등에 동화(Assimilation)가 일어난 연후에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개개인의 모어를 반영시키게 되는 것이다.

상용어(Usual Language)에 관한 자료는 인구에 있어서 언어의 동질성 또는 차별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자료가 출생지에 관한 자료에 결합될때 해외출생인구의 동화율을 연구하는데 특별히 유용성이 큰 것이다.

1개 이상의 특정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여부에 관한 정보는 소수인의 의사교환 및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와같은 자료는 1개이상의 공용어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며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공용상 사용하는 언어등을 결정해야만 되는 것이다.

일국의 공용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제표는 그 국가의 공용어를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계획과 관련할때 특히 유용성이 큰 것이다.

(31) 지역 및 주요구역에 있어서의 거주기간, 연령 및 성별인구
(Population by duration of residence in locality and major civil division, age and sex)

포함인구 ; 총인구

분 류 ;

(a) 지리적구분 : (i) 전국, (ii) 각주요구역별, (iii) 각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i) 및 (ii)의 기준 (101-102 절 참조)
위에서 구분할것.

(b) 지역의 거주기간별 (32-34 절 참조) : 생산지에 계속 거주하
는자 (Since Birth), 비출생지에 거주자 (Not Since Bir-
th), 거주기별로 보면 1년이하, 1-4년, 5-9년, 10년,
10년 이상, 거주년수미상, 일시거주자 (Transient), 또는
방문자, 상주, 일시거주 또는 방문자여부의 미상.

만일 제표가 센서스시에 각지역에서 나타난 인구를 기초로
작성될 경우에는 상주자 또는 일시 거주자에 대한 범주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제표가 각지역의 상주인구를 기초로 할때는 그
필요성이 없게 된다.

(c) 주요구역별 거주기간 (32-34 절 참조) : (b)와 마찬가지로
구분함.

(d) 연령별 (36-38 절 참조) : 1세미만, 1-4, 5-9, 10-14,
15-19, 20-24, 25-34, 35-44, 45-54, 55-64, 65
세 이상, 미상

제 표의 용도

본제표는 순인구이동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본자료에 의해서 일국의 주요구역 및 주요지역별 전입 (인구이동) 추세 (Direction) 를 알수있으며 일국의 특정지역 별 장래 인구를 추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들 추계치는 예시된 지역별 성장에 관한 계획 및 국내인 구 이동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것이다.

(32) 연령, 출생아수 및 교육정도별 15세 이상 여자인구

(Female population 15 years of age and over by age, number of children born alive and educational attainment)

분 류

- (a) 지리적구분: (1) 전국, (11) 각주요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1) 및 (11) 의 기준에 의해 구분할것 (101-102 절 참조)
- (b) 연령별 (36-38 절 참조)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세 이상, 미상
- (c) 출생아수별 (51~55 절 참조) : 0, 1, 2, 3, 4, 5, 6, 7, 8, 9, 10 명이상, 미상
- 각 연령범주내에서의 전부인에 대한 총출생아수를 별도로 한다.
- (d) 교육정도별 (64~69 절 참조) : 첫 단계 수준이전의 교육, 첫 단계수준의 교육, 둘째단계수준졸업이전의 교육, 둘째단계 수준의 교육, 세째단계수준졸업이전의 교육, 세째단계교육수준의 교육, 특별 교육 (수준별로 분류불가능한것) 미상

제표의 용도

본제표는 제표27 에서 산출될 수있는 생산력에 대한 모든

측정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Parity」 특수 출생율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이외에도 본 자료는 교육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들 정보는 차별출산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인(여자)들의 교육이 진전되매따라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된다。

제 2 편에 제시된 제표의 예시

1. 다음의 제표 모형은 제 2 편에서 제시된 각 제표의 필요한 속성분류를 예시한 것이다.

2. 비록 이들 모형이 표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표의 모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제 2 편에 제시된 제표에 관한 기술에서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목적은 다만 완성품으로서의 필요한 기본 요인을 제거하며 이 제표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제 상법중 하나를 제시 하는것에 불과하다.

어떤 결과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는 각국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 제시된 표범주의 내용과 상관분류가 가능한 한 불합리한 것은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재 정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별총인구 및 대 (주요) 소구역별인구

1. Total population and population of major and minor civil divisions, by sex (Basic)

지 리 적 구 분	성 . 별		
	총 수	남	여
총 수			
도 시			
농 촌			
대 (주요) 구역별			
도 시			
농 촌			
소 구 역 별			
도 시			
농 촌			
소 구 역 별			
도 시			
농 촌			
대 (주요) 구역별			
도 시			
농 촌			
소 구 역 별			
도 시			
농 촌			
소 구 역 별			
도 시			
농 촌			

지역의 크기 및 성별 지역인구
 2. (Population in localities by size-class of locality and sex (Basic)

지리적 구분 및 지역의 크기	지역 수	성 별		
		총 수	남	여
총 수				
전 지역 별				
500,000 그 이상의 인구				
100,000 - 499,999 명				
50,000 - 99,999 명				
20,000 - 49,999 명				
10,000 - 19,999 명				
5,000 - 9,999 명				
2,000 - 4,999 명				
1,000 - 1,999 명				
500 - 999 명				
200 - 499 명				
200 명 이하				
인구가 없는 지역				

1(a) 전 국 (b) 각 주요구역별

성별 주요지역별 인구 및 도시집단별 인구

3. Population of principal localities and of their urban agglomerations, by sex (Basic)

지 역	성별					
	총 수		남		여	
	City Proper	Urban agglome- rations	City Proper	Urban agglome- rations	City Proper	Urban agglome- rations
시 또는 읍 A ¹						
시 또는 읍 B ¹						
시 또는 읍 C ¹						
시 또는 읍 D ¹						

1 시 또는 읍의 명칭

가구인구, 가구의 크기별 핵가족의 수 및 가구내 비거주자의 수

4. Population in households and number of family nuclei, by size of household, and number of persons not living in households (Basic)

지리적구분 및 가구의 크기	인구	핵가족 수별 가구②					가구의 총 수 ②	핵가족의 총 수 ②
		0	1	2	3	4 and more not stated		
총 가구								
가구의 구성								
1 명								
2 "								
3 "								
4 "								
5 "								
6 "								
7 "								
8 "								
9 "								
10 명 이 상 미 상								
가구내 비거주자 가구내 거주 또는 비거주여부에 대한 미상								

1 (a) 전국 (b) 각주요구역별 (c) 각소구역별 (d) 각주요지역별

2 가구내 비거주자 및 가구내 거주여부미상자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관계 및 성별 가구의 인구

5. Population in households by relationship to head of household, marital status and sex (Basic)

지 리 적 구 분 가구주와관계및성별	가구의 총인구	배 우 관 계 별					
		미 혼	결혼	미망인	이혼	별거	미상
총 수							
남							
여							
가구주							
남							
여							
배우자							
남							
여							
자							
남							
여							
자의 배우자							
남							
여							
손자 또는 손손자							
남							
여							
양친 또는 배우자의양친							
남							
여							
기타 친척							
남							
여							
일꾼 (하인)							
남							
여							
가구주와관계가없는기타인							
남							
여							
미 상							
남							
여							

(a) 전 국 (b) 각 주요구역별 (c) 각 소구역별

(d) 각 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a), (b), (c)의 기준위에서 구분할 것.

각 세 및 성 별 인 구

6. Population by single years of age and sex (Basic)

지리 적구분①및 연령 ① (in years)	성 별		
	총 수	남	여
연 령 별			
1 세 미 만			
1			
2			
3			
4			
5			
6			
7			
.			
.			
.			
.			
99			
100 세 이 상			
미 상			

전국. 도.시 및 농촌을 구분함

5세연령계급 및 성별인구

7. Population by five-year age groups and sex (Basic)

차리적구분① 및 연령	성 별		
	총 수	남	여
연 령 별			
1세미만			
1 - 4			
5 - 9			
10 - 14			
15 - 19			
20 - 24			
.			
.			
.			
.			
80 - 84			
85세이상			
미 상			

1. (a) 전국
- (b) 각 주요구역별
- (c) 각 소구역별
- (d) 각 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들 (a), (b), (c)의 기준위에서 구분함.

배우관계연령 및 성별인구

8. Population by marital status, age and sex. (Basic)

지리적구분①, 성및배우관계별	연령별	연령별 (in years)						
		15세 미만	15 - 19	20 - 24	25 - 29	75세 이상	미상
남 녀								
총 수								
미혼								
결혼								
미망인								
이혼								
별거								
미상								
남 (as for Both sexes)								
여 (as for Both sexes)								

1. (a) 전국
- (b) 각 주요구역별
- (c) 각 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a)(b)의 기준에서 구분할것.

연령 및 성별 국내 및 국외출생인구

9. Native and foreign born population by age and sex (Basic)

지리적구분①성 및 연령별 ① (in years)	총 수	국내 출생	국외 출생	미 상
남 여 소				
연 령 별				
1 세 미 만				
1 - 4				
5 - 9				
10 - 14				
.				
.				
.				
70 - 74				
75 세 이상				
미 상				
남				
(as for Both sexes)				
여				
(as for Both sexes)				

- 1 (a) 전국
 (b) 각 주요구역별
 (c) 각 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a) (b)의 기준위에서 구분할것

출생국, 연령 및 성별 외국출생인구
 10. Foreign-born Population by country of birth, age and sex (Basic)

지리적구분①대륙 및 출생국, 성별	연령별	연령 (in years)							
		1세 미만	1-4	5-9	10-14	...	70-74	75세 이상	미상
남 녀 Total									
Africa									
Country A ²									
Country B ²									
.									
Country Z ²									
All other countries									
Country not stated									
America, North (as above)									
America, South (as above)									
Asia (as above)									
Europe (as above)									
Oceania (as above)									
Continent not stated									
Male (as for Both sexes)									
Female (as for Both sexes)									

1 (a) 전국 (b) 각주요구역별
 2 국 명

주요구역의 출생, 연령 및 성별 국내출생 인구

11. Native Population by major civil division of birth, age and sex (Basic)

지리적 구분①, 성 및 주요 구역의 출생	연령별	연령 (in years)						
		0-4	5-9	10-14	...	70-74	75세 이상	미상
남 녀								
Total								
Major Civil division A2								
Major Civil division B2								
Major civil division C2								
.								
.								
Major civil division Z2								
남 (as for Both sexes)								
여 (as for Both sexes)								

1. (a) 전국 (b) 각주요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a)(b)의 기준위에
서 구분할 것
2. 주요구역의 명칭

경제활동의 형태, 연령 및 성별... 세이상의 인구

12. Population...years of age and over by type of activity, age and sex (Basic)

지리적구분, 성 및 연령	총 수	Type of activity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미상
			총 수	최초 취업자		
남 녀						
All ages						
Under 152						
15 - 19						
20 - 24						
.						
.						
.						
70 - 74						
75 and over						
Not stated						
남 (as for Both sexes)						
여 (as for Both sexes)						

1. (a)총수 (b)각주요구역별 (c)각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a)(b)의 기준 위에서 구분할 것
2. 최저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센서스조사표상에서 채택된 최저연령 한계 및 14세간의 전연령을 말함.

기능의 범주, 연령 및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13. Population not economically active, by
 functional categories age, and sex (Basic)

지리적구분①성 및 연령	비경제활동인구	기능별 범주				
		가사종사자	학생	소득취득자	기타	미상
남녀						
All ages						
Under 15						
15 - 19						
20 - 24						
.						
.						
.						
70 - 74						
75 and over						
Not stated						
Male (as for Both sexes)						
Female (as for Both sexes)						

- 1 (a) 전국 (b) 각주요구역별
 2 12표의 (2)와 동일함

산업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14.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industry, age and sex¹ (Basic)

지리적구분② 성 및 산업별	연령별	연령 (in years)						
		15 세 미 만	15- 19	20- 24	25- 29	...	75세 이상	미상
남 총경제활동인구 Division 0 Major group 01 Major group 02 (etc.) Division 1 Major group 11 Major group 12 (etc.) Division 9 Major group 90 남 (as for Both sexes) 여 (as for Both sexes)								

1. 실업자 (처음으로 취업코자하는 자를 포함해서) 에 관해서는 명
확하게 언급되어야함
2. 전 국 , 도시 및 농촌을 구분할 것
3. 12 표의 (2) 와 동일함

직업연령 및 성별경제활동인구
 15.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occupation, age and sex¹ (Basic)

지리적구분 ②, 성 및 직업별	연령별	연령 (in years)						
		15세 미만	15- 19	20- 24	...	70- 74	75세 이상	미상
남 녀								
경제활동총인구								
Major group 0								
Minor group 0-0								
Minor group 0-1								
(etc.)								
Major group 1								
Minor group 1-0								
Minor group 1-1								
(etc.)								
.								
.								
.								
Major group X								
Minor group X-1								
Minor group X-2								
Minor group X-3								
Armed forces								
남 (as for Both sexes)								
여 (as for Both sexes)								

1. 실업자 (처음으로 취학코자 하는자를 포함) 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되어야 함.
2. 전국, 도시 및 농촌을 구분할것.
3. 12표의 (2) 와 동일함.

종사상의지위, 연령 및 성별경제활동인구
 16.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status, age and sex¹ (Basic)

지리적구분 ②, 성 및 연령	총 경제활동인구	종사상의지위별					분류불능
		취업자	자영업주	피고용자	무보수가종사자	생산자 조합원	
남							
All ages							
Under 15							
15 - 19							
20 - 24							
25 - 29							
.							
.							
.							
70 - 74							
75 and over							
Not stated							
남 (as for Both sexes)							
여 (as for Both sexes)							

1. 실업자 (처음으로 취업코자 하는자를 포함) 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되어야 함.
2. 편곡, 도시 및 농촌을 구분할것.
3. 12표의 (2) 와 동일함.

종사상의 지위, 산업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17.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status, industry and sex¹(Basic)

지리적 구분② 성 및 산업별	총경제 활동인구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자영 업주	피 고용자	무보수 가족 종사자	생산자 조합원	분류 불능
남 녀 총경제활동인구 Division 0 Major group 01 Major group 02 (etc.) Division 1 Major group 11 Major group 12 (etc.) . . Division 9 Major group 90 남 (as for Both sexes) 여 (as for Both sexes)							

1. 실업자 (처음으로 취업코자하는 자를 포함해서) 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되어야 함
2. (a) 전 국 (b) 각 주요구역별 (c) 각 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a), (b)의 기준위에서 구분할것

종사상의지위·직업 및 성별경제활동인구
 18.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status,
 occupation and sex¹ (Basic)

지리적구분②, 성 및 직업	총경제활동인구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자영업주	미고용자	무보수가족종사자	생산자조합원	분류불능
남녀 총경제활동인구							
Major group 0							
Minor group 0-0							
Minor group 0-1							
Major group 1							
Minor group 1-0							
Minor group 1-1							
(etc)							
.							
.							
.							
Major group X							
Minor group X-1							
Minor group X-2							
Minor group X-3							
Armed forces							
Male (as for Both sexes)							
Female (as for Both sexes)							

1. 실업자 (처음으로 취업코자 하는 자를 포함해서) 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되어야 함.
2. (a) 전국 (b) 각주요구역별 (c) 각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a) (b) 의 기준 위에서 구분할것

산업, 직업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19.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industry,
 occupation and sex¹ (Basic)

지리적구분②, 성 및 직업별	총 경제 활동인구	산 업 별 ③							
		분 류			분 류			분류 대분류 90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01	02	etc.	11	12	etc.				
남 여									
총 경제 활동 인구									
Major group 0									
Minor group 0-0									
Minor group 0-1									
(etc.)									
Major group 1									
Minor group 1-0									
Minor group 1-1									
(etc.)									
.									
.									
Major group X									
Minor group X-1									
Minor group X-2									
Minor group X-3									
Armed forces									
남 (as for Both sexes)									
여 (as for Both sexes)									

1. 실업자 (처음으로 취업코자 하는자를 포함해서) 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되어야 함.
2. (a)전국 (b)각주요구역별 (c)각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들 (a), (b)의 기준위에서 구분할 것.
3. 표준산업분류 (ISIC) 의 대분류별 분류가 불가능 할 경우는 그대신 각분류별 총수가 제시되어야 함.

직업, 배우관계,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20.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occupation, marital status, age and sex

지리적구분②, 성, 연령 및 배우관계	총 경제 활동인구	직업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군인
남						
녀						
Total						
Under 15						
15 - 24						
25 - 44						
45 - 64						
65 and over						
Not stated						
Single						
Under 15						
15 - 24						
.....						
Not stated						
Married						
Under 15						
15 - 24						
.....						
Not stated						
Other						
Under 15						
15 - 24						
.....						
Not stated						
Not stated						
Under 15						
15 - 24						
.....						
Not stated						
남						
(as for Both sexes)						
녀						
(as for Both sexes)						

1. 실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되어야 함.
2. (a)전국 (b)각주요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a), (b)의 기준위에서 구분할것.
3. 12표의 (2)와 동일함.

경제활동의 형태·배우관계및 연령별...세 이상의 여자인구

21. Female population ... years of age and over by type of activity, marital status and age (Basic)

지리적구분·배우관계 및 연령별	경제활동의 형태				
	여자총수	경제활동인구			미상
		취업자	실업자		
		총수	처음으로 취업하는자		
Total					
All ages					
Under 15					
15-19					
20-24					
25-29					
.					
.					
.					
70-74					
75 and over					
Not stated					
Single					
(as for Total)					
Married					
(as for Total)					
Widowed					
(as for Total)					
Divorced					
(as for Total)					
Separated					
(as for Total)					
Not stated					
(as for Total)					

1 (a) 전국. (b) 각주요구역별 (c) 각주요지역별, 도시 및 농촌을 (a)(b)의 기초위에서 구분할것.
2. 12 표의 (2)와 동일함

문맹여부·연령 및 성별 10세 이상의 인구
 22. Population 10 years of age and over by literacy, age and sex (Basic)

지리적구분 성 및 연령	총 수	문 맹 여 부		
		비문맹	문 맹	미상
Both sexes				
Total 10 and over				
10 - 14				
15 - 19				
20 - 24				
25 - 29				
30 - 34				
35 - 44				
45 - 54				
55 - 64				
65 and over				
Not stated				
Male (as for Both sexes)				
Female (as for Both sexes)				

1. (a) 전 국 (b) 각 주요구역별, 도시 및 농촌을 (a), (b)의 기준
 위에서 구분할 것.

교육정도, 연령 및 성별 25세이상 인구
 23. Population 25 years of age and over by education attainment, age and sex(Basic)

지리적 구분, 성 및 교육정도	연령 (in years)						미상
	25 and over	25-34	35-44	45-54	55-64	65 and over	
남							
Total							
Less than 1 completed grade at first level:							
First level:							
Grade 1							
.							
.							
Grade not stated							
Second level:							
General:							
Grade 1							
.							
.							
Grade not stated							
Vacational:							
Grade 1							
.							
.							
Grade not stated							
Teacher training:							
Grade 1							
.							
.							

Grade not stated						
Third level: University or equivalent institution:						
Grade 1						
Grade not stated						
Non-university teacher education:						
Grade 1						
Grade not stated						
Other non-university: Grade 1						
Grade not stated						
Special education (not classified by level)						
Level not stated						
남 (as for Both sexes)						
여 (as for Both sexes)						

1. (a) 전국 주요 구역별.
(b) 도시 및 농촌을 (a), (b)의 기준위에서 구분할 것

취학, 교육경도, 연령 및 성별 24세까지의 인구
 24. Population ... -24 years of age by school attendance,
 educational attainment, age and sex (Basic)

	성 및 연령 (in years)						Male (as for Both sexes)	Female (as for Both sexes)
	Both sexes							
	... 24	...-9	10-14	15-19	20-24	Not stated		
지리적구분, 취학및 교육경도								
Total								
Less than I completed grade at first level.								
First level: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not stated								
Second level: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not stated								
Vacational: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not stated								

Grade not stated	
Teacher training :	
Grade 1	
.	
.	
.	
Grade not stated	
Third level:	
University or equiv-	
alent institution:	
Grade 1	
.	
.	
.	
Grade not stated	
Non-university teacher	
education:	
Grade 1	
.	
.	
.	
Grade not stated	
Other non-university:	
Grade 1	
.	
.	
.	

지리적구분 · 취학및교육정도	성 및 연령 (in years)							Male (as for Both sexes)	Female (as for Both sexes)
	Both sexes								
	...24	...-9	10-14	15-19	20-24	Not stated			
Grade not stated									
Special education (not classified by level)									
Level not stated									
Attending school (as for Total)									
Not attending school (as for Total)									
Not stated (as for Total)									

1. The lower age-limit should be the usual age for entrance into school.
2. If a significant number of older persons are attending school, the upper age-limit should be extended as appropriate and the necessary additional categories should be added to the age classification.
3. (a) total country, (b) each major civil division. Distinguish urban and rural for (a) and (b).

취학 각세 및 성별 24세까지의 인구
 25. Population... to 24² years of age, by school attendance, single years of age and sex(Basic)

지리적구분 ③, 성 및 연령	총 수	School attendance		
		Attend- ing school	Not attending school	Not stated
남 녀				
총 수				
51				
6				
7				
8				
9				
10				
11				
12				
13				
14				
.				
.				
24 ²				
Not stated (but under 25) ²				
남 (as for sexes)				
녀 (as for Both sexes)				

1. The lower age-limit should be the usual age for entrance into school.
2. If a significant number of older persons are attending school, the upper age-limit should be extended as appropriate and the necessary additional categories should be added to the age classification.
3. (a) total country, (b) each major civil division. Distinguish urban and rural for (a) and (b).

직업, 교육정도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인구
 26.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occupation, educational attainment, age and sex1(Basic)

지리적 구분 ② 성, 교육정도 및 연령	총 경제 계 활동인구	직						업														
		대		분		류		대		분		류										
		소		분		류		대		분		류										
		0-0	0-1 (etc.)	1-0	1-1 (etc.)	1-1 (etc.)	X-1	X-2	X-3	군 인												
남																						
총 수																						
All ages																						
Under 15																						
15-19																						
20-24																						
25-44																						
45-64																						
65 and over																						
Not stated																						
First level of education not completed (as for Total)																						
First level completed (as for Total)																						
Second level started but not completed (as for Total)																						
Second level completed (as for Total)																						

연령 및 출생아수별 15세 이상의 여자인구

27. Female population 15 years of age and over
by age and number of children born alive
(Basic)

지리적구분 ② 및 연령	총 수	여 자 인 구						총출생 아 수
		출 생 아 수 별						
		0	1	2	...	10명 이 상	미 상	
15세 이상								
15-19								
20-24								
25-29								
30-34								
.								
.								
.								
70-74								
75세 이상								
.								
미 상								

1. If the population included is restricted to ever-married females, this fact should be clearly stated.
2. (a) total country, (b) each major civil division.
Distinguish urban and rural for (a) and (b)

연령 및 생산아수별 15세 이상여자인구

28. Female population 15 years of age and over by age and number of children living (Basic)

지리적구분② 및 연령	총 수	여 자 인 구							총출생 아 수
		출 생 아 수 별							
		0	1	2	3	...	10명 이상	미상	
15세 이상									
15-19									
20-24									
25-29									
30-34									
.									
.									
.									
70-74									
75세 이상									
미 상									

1. If the population included is restricted to ever-married females, this should be clearly stated
2. (a) total country, (b) each major civil division. Distinguish urban and for (a) and (b)

종교, 연령 및 성별인구
29. Population by religion, age and sex (Basic)

지리적구분①, 성 및 종교	연령별	연령 (In years)						
		5세 이하	5- 14	15- 24	...	65- 74	75세 이상	미상
Both sexes								
Total								
[Each religion (and, if desired) of significance in the country]								
All others								
No religion								
Not stated								
Male (as for Both sexes)								
Female (as for Both sexes)								

1. (1) total country, (b) each major civil division

언어, 연령 및 성별 인구
 30. Population by language (mother tongue, usual language or ability to speak one or more languages), age and sex (Basic)

지리적구분①, 성 및 언어	연령별	연령 (in years)				
		Under 5	5 - 14	15-24	... 65-74	75 세 이상
Both sexes						
Total						
[Each language or combination of languages for which separate information is required].						
All others						
Not stated						

1 (a) total country, (b) each major civil division, (c) each Principal locality.

지역 및 주요구역의 거주기간, 연령 및 성별인구
 31. Population by duration of residence in locality and major civil division, age and sex (Basic)

지리처구분①, 성 및 거주기간	연령별	연령 (in years)						
		1세 미만	1-4	5-9	10-14	65세 이상	미상
Both sexes								
Total								
Resident in major civil division since birth								
Not resident in locality since birth								
Resident in locality less than 1 year								
Resident in locality 1-4 years								
Resident in locality 5-9 years								
Resident in locality 10 or more years								
Duration of residence in locality stated								
Not resident in major civil division since birth								

Resident in major civil
division less than 1 year
Resident in major civil
division 1-4 years
Resident in locality less
than 1 year
Resident in locality 1-4
years
Duration of residence in
locality not stated
Resident in major civil
division 5-9 years
Resident in locality less
than 1 year
Resident in locality 1-4
years
Resident in locality 5-9
years
Duration of residence in
locality not stated

	연 령 (in years)						
	연령별	1세미만	1 - 4	5 - 9	10-14	65세 이상
지리적구분①, 성 및 거주기간							
Resident in major civil division 10 or more years							
Resident in locality less than 1 year							
Resident in locality 1-4 years							
Resident in locality 5-9 years							
Resident in locality 10 or more years							
Duration of residence in locality not stated							
Duration of residence in major civil division not stated							
Resident in locality less							

Resident in locality	
1-4 year	
Resident in locality	
5-9 years	
Duration of residence in locality not stated	
Not stated whether resident in major civil division since birth	
Resident in locality less than 1 year	
Resident in locality 1-4 years	
Resident in locality 5-9 years	
Resident in locality 10 or more years	
Duration of residence in locality not stated	
Transient or visitor?	
Not stated whether resident, transient or visitor?	

지리적구분①, 성 및 거주기간	연령별	연령 (in Years)					
		1세 미만	1-4	5-9	10-14	15-64	65세 이상
Male (as for Both sexes)							
Female (as for Both sexes)							

1. (a) total country, (b) major civil division, (c) each principal locality, Distinguish urban and rural for (a) and (b).
2. This category is needed only if the tabulation is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population found in each area at the time of the census; if it is not required if the tabulation is based on the resident population of each area.

(32) 연령, 출생아수 및 교육정도별 15세 이상 여자인구
 32. Female population 15 years of age and over by age, number of children born alive and education attainment (Additional)

지리적구분②, 교육정도 및 연령 수	총수	여 자 인 구					총출생아수
		출 생 아 수 별					
		0	1	2	10명이상 미상	
총 수							
15 and over							
15-19							
70-74							
75 and over							
Not stated							
First level of education not completed (as for Total)							
First level completed (as for Total)							
Second level started but not completed (as for Total)							

지리적구분②, 교육정도 및 연령	총수	여 자 인 구					총출생아수
		생 산 아 수 별					
		0	1	2	10명이상 미상	
Third level started but not completed (as for Total) Third level completed (as for Total) Special education (not classified by level) (as for Total) Level not stated (as for Total)							

1. If the population included is restricted to ever-married females, this fact should be clearly stated.
2. (a) total country, (b) each major civil division. Distinguish urban and rural for (a) and (b).